

2018학년도 학교 건강증진 기본방향



2018년 부산교육 방향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 변화하는 학교, 성장하는 학생 ·



신나는 교육

- 교육과정 - 수업 - 평가의 일체화
-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

건강한 교육

-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 참여자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
-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행복한 교육

-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 현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
-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학교 건강증진 기본방향



◆ 목 표 ◆

학생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 중점 추진 방향 ◆

I.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6. 학교 내 감염병 관리
7.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8. 학생 구강보건 관리
9.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II.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2. 학교 실내공기질 등 환경 위생 관리
3. 환경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및 소음 피해 예방
4.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 판매기 위생관리
5. 학교 석면 안전관리

III. 학교보건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1.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2.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강화
3.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 증진 사업
4. 2018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4차)

CONTENTS

I

•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3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7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10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12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15
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18
7.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Good SMILE 프로그램	5... 2
8. 학생 구강보건 관리.....	28
9.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31

II

•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35
2. 학교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리.....	41
3. 환경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및 소음 피해 예방.....	64
4.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15
5. 학교 석면 안전관리.....	54

III

• 학교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

1.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16
2.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	63
3.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증진 사업 적극 참여.....	46
4. 2018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4차).....	56



IV

• 보고사항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70
2.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17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72
4.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73
5.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74
6. 학생 시력검사 현황.....	75
7.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76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77
9.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80
10.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	81
11. 학교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관리실적.....	83
12.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84
13. 소음 및 대기오염 피해 실태조사표.....	88

V

• 참고자료

[자료 1]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39
[자료 2]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79
[자료 3]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89
[자료 4] 학교 감염병 발생시 교육지원청 대응요령.....	91
[자료 5]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95
[자료 6]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95
[자료 7]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98
[자료 8]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 기준.....	111
[자료 9]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일지.....	121
[자료 10]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설명자료.....	131
[자료 11] 공기정화장치 운영 안내서.....	141
[자료 12]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상황 자체점검표.....	171
[자료 13] 교사내 소음피해 현장확인 조사표.....	181
[자료 14]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일일 위생 점검표.....	191
[자료 15]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점검표.....	191
[자료 16] 부산관내 보건소의 2018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171
[자료 17] 학교보건법령.....	189
※ 업무분장 관계 관련 법령 안내(발췌).....	18

2018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건강증진 기본방향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I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7.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Good SMILE 프로그래
8. 학생 구강보건 관리
9.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현황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체험활동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지속적·체계적 운영

< 2017년도 중·고등학교 보건과목 선택 및 보건교육 실시 현황 > (단위: 교,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선택현황	학교수	선택현황	학교수	선택현황
전국	3,210	619(19.3%)	2,359	227(9.6%)	5,569	846(15.2%)
부산	174	26(15%)	144	13(9%)	318	39(12.3%)

- 초·중등교육과정 및 관련법령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 실시
 - ※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운영모형 개발·보급('15.2월)
- 부산시교육청 성교육 선택과목 선정학교 : 「성과 건강」 3교, 「인간과 성」 1교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 실시

< 성교육 실시 현황 (학년평균 수업시수)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15.0	15.0	14.9	15.0	15.2	15.0
중	17.1	16.2	15.7			
고	15.6	14.9	14.7			

추진방향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지속적·체계적 운영
 - ※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 학교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보건’ 과목 선택 현황 보고 : [보고서식 1]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율형 교과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교육실 별도 설치 시 보건실 근접 설치로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
- 학생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교과와 연계한 포괄적 성교육 과정 편성·운영
 -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의무적 실시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간계획 학교교육계획에 포함
 - 선택교과(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및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연계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부산시교육감 인정도서 <성과 건강>, <인간과 성> 활용 및 선택교과 확대
 - 부산시교육감 성교육 인정도서 활용 확대
 - 성교육 담당교사 주관, 학년별 관련교과(부장) 협의회 구성,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운영 모형 : 표준형(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혼합형) 중 학교 실정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운영

구분	표준형(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혼합형)
특징	• 관련교과 담당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성교육 실시 • 교과관련 내용에 맞춰 시간 확보 • 교과 관련성이 없는 시간은 대체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보건 또는 관련 전문교사가 지도	•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성교육 실시 • 11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성교육을 위한 시수를 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 보건교사와 외부전문가 또는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보건)를 활용하여 성교육 실시 • 성교육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 •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형, 전담형, 초빙형을 학년단위로 선택적으로 구성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집중 학년제 실시

- 대상 : 초4, 중1학년
- 방법 : 3차시 집중 교육(연간 15차시에 포함하여 운영)
- 교육내용 : 3차시 교육내용 요소를 포함한 집중교육 실시

구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1차시	생명의 소중함(생명의 탄생, 생명존중 등)	청소년의 성(성의 올바른 의미 알기 등)
2차시	또래 및 이성친구와 지켜야 할 놀이 예절	건강한 이성교제
3차시	성폭력예방교육(사이버성폭력포함)	성폭력예방교육(사이버성폭력포함)

- 초4학년 전 학급대상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포함) 1차시 강사 지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성교육 집중학년제 지도안 포함 보건교육 운영 자료집 활용(2017. 3)

○ 연구(시범)학교 및 교과연구회 지원활동 강화

- 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보건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보건교과(교육) 수업연구회 1팀, 성교육 교사 동아리 1팀, 각 팀당 3,000천원 지원(교육부요청)

○ 교육부 주관 학교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직무연수, 신규 보건교사 직무연수(전문기관 위탁 운영)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 담당교사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 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지도안 확인 및 담당교사 입장 지도
- 기관별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각 영역별 1시간 총3시간 이상 실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실적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해당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본방침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복지부 공동조사, 2016년 제12차) 결과 현재 흡연율은 6.3%, 현재 음주율은 15.0%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현재흡연율(전국) : ('11)12.1% → ('13) 9.7% → ('15) 7.8% → ('16)6.3% → ('17) 6.4%
 - ※ 현재음주율(전국) : ('11)20.6% → ('13)16.3% → ('15)16.7% → ('16)15.0% → ('17)16.1%

<표1> 부산 남여 중·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

구분	중고등학생 흡연율(%)				중고등학생 음주율(%)			
	2016		2017		2016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부산	8.5	2.5	7.9	1.7	17.0	12.8	17.1	12.3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 ※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출처 : 대검찰청) : ('12)38명→('13)58명→('14)102명→('15)128명→('16)121명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 금지 (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학교장은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설명회, 심화형학교 업무담당교사 연수, 관리자 연수, 일반교원 대상 원격연수 등에 해당 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부산시교육청 위탁운영기관인 학교흡연예방사업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컨설턴트, 담당교사 직무연수, 소그룹 관리자 연수 등에 청소년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용 포함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 위탁운영기관인 찾아가는 금연학교, 보건소 등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다. 식약처 등 전문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기본방침

- 보건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 개선·보완
- 학생들이 청결하고 안락한 조건에서 부상 치료(응급처치) 및 요양·상담

현황

- 학교보건실 현대화 현황

구 분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학교		305	174	145	15	639
현대화 실시학교	교육청지원*	230	135	121	8	494
	학교자체	61	30	21	4	116
	계	291 (95.4%)	165 (94.8%)	142 (97.9%)	12 (80.0%)	610 (95.5%)
현대화 미실시학교	통·폐합 검토	5	1			6
	면적 확보 불가	8	8	3	3	22
	BTL 업체 계획	1				1
	계	14 (4.6%)	9 (5.2%)	3 (2.1%)	3 (20.0%)	29 (4.5%)

* 2018년 현대화 추진 학교 2교(공덕초, 구남중) 포함

추진방향

- 보건실 면적 및 설비·기구의 법정기준 확보 철저
 - － 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 보건실 면적 기준
 - 초·중·고(각종·특수 포함) : 66㎡ 이상
 - ☞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 33㎡ 이상 확보

- 남·여 공학 학교는 안정실을 남·여 구분 설치
 - 학교 신설 시부터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기구 등을 확보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기준에 맞도록 시설
 - 시설부서 협조 : 교육시설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사업 추진
 - 학교보건실 현대화 시설·설비 기준 [참고자료 1]
 - 보건실은 관리실, 처치실, 안정실, 상담실 등으로 구획 설치
 - 보건실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선정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기준(교육규칙)¹⁾에 맞도록 확보하되, 필수기구는 반드시 확보
 - 구급약품 및 구급처치용 재료 확보, 냉·난방시설, 침대, 일반비품과 의료기구, 건강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는 수납장 등 확보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보건실 상태를 진단하여 문제점(노후, 면적 협소, 위치 부적정 등)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보건실 내부 환경위생 관리 철저
 - 침구(침대, 이불, 베개 등) 정기 세탁, 환기상태 및 곰팡이 유무 등 점검(실내공기질 점검 대상)
 -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철저
 -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활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실시
 - 근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학교의사 및 약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 수립 및 교내 환경위생 관리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학교의사), 의약품 및 실험실 독극물 관리 등에 관한 자문(학교약사) 등
 - 위촉 : 면허(의사·한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
 - 위촉된 학교의사·약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
-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참고자료 2]

1)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

기본방침

-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학생 건강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현 황

- 학교 건강검사의 종류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및 단가	검사방법
신체발달상황		초·중·고 전교생	연중	키, 몸무게, 비만도	초 1,4학년과 중·고1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학교 교직원이 실시
건강조사		초·중·고 전교생	4월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 제2항	"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연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2항	학생(학부모)들이 지정 검진기관 방문 실시 원칙 (학교회계 전액 부담)
		초2,3,5,6학년	연중	구강검진 (7,060원/1인당)	"
별도 검사	소변검사	초·중·고 전교생	3월~10월	단백, 당, 잠혈 (890원)	초 1,4학년과 중·고1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한국학교보건협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 (학교회계 전액 부담)
	결핵검사	고 2, 3학년	연중	결핵 (3,160원)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학교회계 전액 부담)
		중 2, 3학년	연중	상동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부산광역시 예산 부담)
	시력검사	*초·중·고 전교생	연중	시력	교직원이 실시

※ 중학교 2, 3학년 결핵검사는 부산시 지원 사업임

○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학생수	126,845	127,346	121,611	111,911	111,999	109,404
실시자수	124,215	125,547	120,219	110,447	110,469	109,169
비율 (%)	97.9	98.6	98.9	98.7	98.6	99.8

※ 12월말까지 미실시한 학생은 익년도 2월말까지 검진 독려

추진방향

○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물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 [참고자료 3]에 의거 실시
- 결과보고 : [보고서식 2,3,4,5,6]에 의거 제출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별표 18]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2018~2020년 표본통계 생성을 위한 표본학교 명단은 별도 통보 예정

기본방침

-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현황

- 2017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			전문기관별 의뢰 현황					
	검사실시 학생수	관심군 학생수 (관심군비율%)	2차 검사 조치학생수 (의뢰율%)	Wee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계
초	52,717	1,231(2.3)	1,157(94.0)	174	566	108	245	64	1,157
중	25,905	1,093(4.2)	1,063(97.3)	211	424	145	252	31	1,063
고	30,605	759(2.5)	665(87.6)	100	268	126	152	19	665
특수	24	0(0)	0(0)	0	0	0	0	0	0
계	109,251	3,083	2,885	485	1,258	379	649	114	2,885
		(2.8)	(93.6)	(16.8)	(43.6)	(13.1)	(22.5)	(4.0)	

- 「학교보건법」 개정('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추진방향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 검사대상 : 초1·4학년, 중·고1학년
 - 기타 학년 학생은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수관리 지속

- 검사절차 :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III)를 사용하고 기타 표준화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 실시 지양
 -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 가능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 검사시기 :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치유 지원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철저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 방지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전문성 강화 등 지원
 -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 계획에 의거 전문적인 치료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
 - 지역사회 전문자원 활용 학교 지원 기반 구축 : 「학교마음건강자문의사」 제도, 마음건강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마음건강관리 전문자원단」 운영

- 관심군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전문기관 심층평가, 병원 정밀검진·치료비 지원(50만원 이내/1인), 「청소년 마음건강돋보기」 교육, 찾아가는 상담,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 학교 내 마음건강관리 역량제고 및 인식 개선 : 학생정서케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운영, 학생 정신건강관리 원격 연수, 마음건강 힐링 뮤지컬 제작·운영
※ 「2018년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계획」 별도 시행

기본방침

-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 학교 관계자 대상 연수 등 예방 체계와 함께 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현황

-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부산)

연도별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수족 구병	성홍열	유행성 각결막염	홍역	결핵	제1군 감염병		기타		계
											법정	비법정	
2015	3,921	405	476	37	10	98	0	57	A형간염(1)	1	61	35	5,101
2016	18,256	121	522	415	22	191	1	21	세균성이질(2) 장티푸스(1)	3	233	91	19,876
2017	10,348	95	771	107	78	241	0	17	장티푸스(1)	1	132	64	11,854

* 2017년 발병 순위 :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각결막염>수족구병>유행성이하선염

* 인플루엔자, 수두 집단 발생사례 증가

- 최근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발병인원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 학업 스트레스 및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 저하
 - － 감시 및 보고체계 강화로 통계처리의 투명화

추진방향

-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 －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용(교사 및 학부모용)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보급(건강생활과-5990, 2017.4.3.)
⇒ 학생건강정보센터[학교보건>건강증진교육>감염병예방(검색 : 매뉴얼)]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빈발 감염병 중심 예방교육, 환기 지도 강화

- 월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1830(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 실천 생활화 지도 및 환기 실시

※ 휴식시간 중 ‘손 씻기 송’, ‘환기 송’ 활용 권장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건강생활>학교보건>214번 자료

－ 학교관리자 및 교사, 교육청 담당자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실시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직무연수”(부산교육연수원) 과정 적극 참여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지속 실시 예정
- 교육청과 방역당국(부산시, 구·군보건소) 합동 감염병 예방 연수 적극 참여

－ 학부모용 홍보자료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 등 포함한 학부모용 리플렛을 가정통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제공

⇒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교사 및 학부모용)

■ 가정과 연계한 감염학생 관리

- － 감염병으로 등교중지(격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통제
- － 가족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 유도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병문안 자제, 특히 외국 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외국 전입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제출서류에 예방접종 증명서 추가

※ 외국 거주 시 접종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내 보건소(또는 병·의원)에서 해당 연령층에 필요한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 해외 출입국(봉사활동, 여행, 견학 등) 시 학생·교직원 대상 귀국 후 감염여부(잠복기간)

모니터링 강화

-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 실시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신고
-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주간 감염병 소식지’를 학생 및 학부모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 ※ 주간 소식지는 ‘업무시스템 공지게시란’에 탑재

○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 월별 감염병 예고제 실시
 - 월별 다발하는 감염병을 매월 예고하여 각급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
 - ※ 월별 주요 감염병 발병 현황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참조】
- 학교 유행경보제 운영
 - 학교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고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학교유행경보 발령
 - 학교유행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학교관계자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마련
-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소아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교육지원청은 자체계획 수립으로 연 1회 이상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상반기내에 실시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집단발생학교 또는 결핵 발생학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및 방역비 지원
 - ※ 학교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대응 요령 [참고자료 4]
-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말까지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시설환경 조성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화장실에 비누·종이타월·손 건조기 비치, 개인 손수건 지참 지도

－ 교내 정기 방역 소독 실시(의무화) : 연 5회

■ 교내 정기방역 소독 실시 기준

- － 실시 횟수 : 4월~9월(1회 이상 / 2개월), 10월~3월(1회 이상 / 3월)
- － 실시 방법 : 소독 대행업체(소독필증)
-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4항 [별표 7]

-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1월) 또는 감염병 유행경보, 주의보 등 발령 시 추가 실시 권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

- － 학생수 및 학급수 등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 감시, 전파 차단, 소독 등을 위해 방역물품 확보

■ 권장 기준

- － 체온계 :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
- － 의료용 장갑 : 보건실용(학급수 × 5개)
- － 일회용 마스크 :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
- － 기타(필요 시) :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

○ 학교내 감염병 발생 보고 등 후속대응 철저

-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에 따름

- － 학교에서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인지 즉시 NEIS에 입력하고, 법정 제1군 감염병·홍역·결핵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신고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NEIS를 통한 감염병 발생 보고 철저(학교→교육지원청)

- － 학교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NEIS 시스템에 따라 보고
- － 최초 보고 이후 ‘완치 보고, 보고 오류 수정’ 등 변동사항 보고 철저
-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 [참고자료 5]

- － 교육지원청은 매일 NEIS 시스템을 확인하여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시교육청에 지연제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 방역조치, 언론 취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 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보고서식 8】

-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휴교 또는 등교중지 조치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98~p104) 준수 철저
 - 등교중지 : 실시 절차 및 등교중지 학생의 관리 등 이행
 - 휴업·휴교 : 실시 절차 및 휴업 및 휴교에 따른 조치 등 이행
- ※ 감염병으로 인한 임시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결정한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보고

■ 감염병 환자 출결인정 기준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 으로 인정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제출 시 법정 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외 감염병은 ‘병결’처리

- 학생 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 및 교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와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가 종료되기 전 학생건강기록부에 예방접종 기록 등의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 학생건강기록부에 직접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활용
 -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히 부작용 방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 ① 교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 신속하게 격리조치
- ② 일일 결석자 원인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 협조
- ③ 예방요령 등 보건(계기)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 ④ 예방요령 및 예방접종 가정 안내(가정통신 등), 학교홈페이지 이용 홍보
- ⑤ 보건소 및 병·의원 치료 안내, 정보공유, 역학조사 협조 등
- ⑥ 특별 방역·소독 실시 및 시설물 위생관리, 수시환기 지도
- ⑦ 상담 실시 및 치료·투약과정 확인
- ⑧ 생활지도 강화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시행

○ 학교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 학생 정기 결핵검사(흉부X-Ray촬영)를 통한 유소견자 조기 발견 치료체계 구축

• 대상 : 중·고등학생

• 검사기관 : 1학년은 정기 건강검진 시 포함 실시(학교 지정 병·의원), 2·3학년은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해당학교 방문(출장) 검진 실시

* 중학교 2·3학년은 결핵 예방차원에서 부산시 예산 지원으로 실시

－ 교직원 결핵 감염 여부 확인 철저

• 결핵예방법 안내(발췌)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결핵검진 등) ①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항 제1호, 제2호 － 결핵검진 : 매년 실시 － 잠복결핵검진 : 근무기간중 1회 ③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당국의 결핵예방(결핵의심자,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무료검진 실시 하고 있음

• 매년(국가건강검진 실시 연도 제외) 결핵검진실시 방안

구분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검진 방안	- 유·초등 교직원 - 일과 후 보건소(학교 소재지 관할) 내방 검진 - 중·고등 교직원 -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학교 방문시 검진	※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계획에 따라 추후 통보
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출 - 유·초 : 보건소 검진비 적용(6,320원/1인) - 중·고 :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 검진비 적용(3,160원/1인)	

• 교직원이 휴직·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복귀전에 X-선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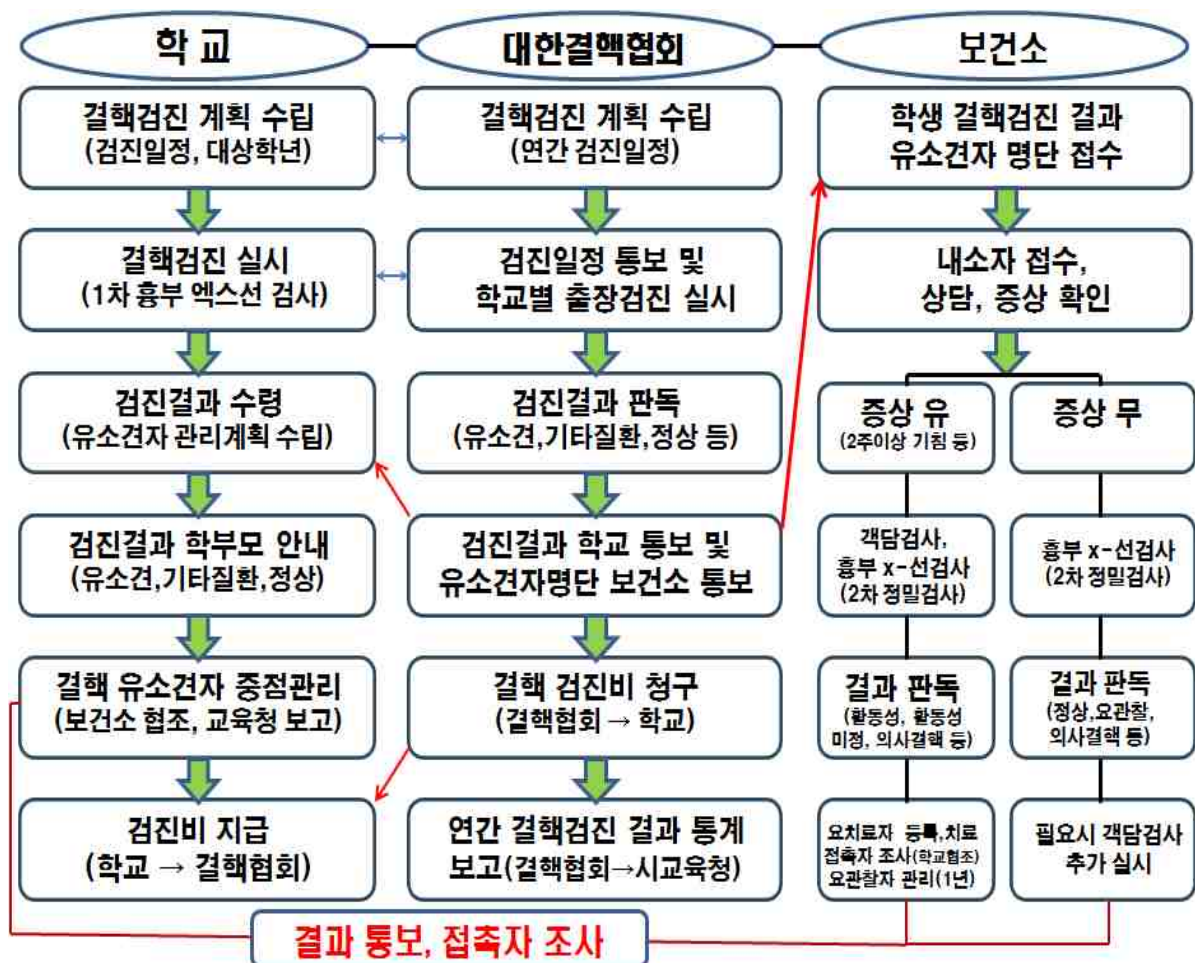
•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력 및 용역업체에서 배치되는 인력(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 교직원의 결핵검진(X-선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연도에 실시한 것은 당해연도의 결핵검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년에 1회(사무직) 또는 1년에 1회(비사무직)]

- 학생 및 교직원 결핵 발병 시 「학교결핵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 전파 조기 차단
 -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3~4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학교별로 보건소에 무료 결핵검진 가능여부 확인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결핵관리지침」 : 시교육청 업무포털 교무업무 지원 탑재
⇒ 과별 자료실>건강생활과>43번 자료

<결핵검사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업무 흐름도)>



기본방침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비만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학교체육·보건·급식 분야의 협업을 통해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추진

현 황

- 2016년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된 후 총 4차 T/F회의를 거쳐 체육·보건·급식 분야 공동과제를 ‘학생 비만 관리’로 정함
- T/F회의 결과를 반영한 「Good SMILE 프로그램」 계획 수립, 2017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시행

Good Smile이란? Sports(체육) + Meals(급식) + in Health(보건) 영역을 결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하고 스스로 학습(Learn)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 건강을 증진(Enhance)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 2017년도 비만학생 현황(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 통계, 부산)

구 분	검 사 학생수	경 도		중등도		고 도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1,731	148	8.5%	79	4.6 %	15	0.9 %	242	14.0 %
중 학 교	1,136	97	8.5 %	73	6.4 %	24	2.1 %	194	17.1 %
고등학교	1,245	108	8.7 %	109	8.8 %	44	3.5 %	261	21.0 %
합 계	4,112	353	8.6 %	261	6.3 %	83	2.0%	697	17.0 %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7. 4.12.)

추진방향

- Good SMILE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 분야별 전문가(분기 1회) 및 업무관계자(수시) TF 운영으로 추진내용 점검
 - 학생비만예방협의회 운영으로 비만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건강을 생각하는 칼로리 계단」 설치를 통한 걷기 운동 실천 문화 조성
 - 사업대상 : 20교 예정
 - 사업내용 : 학생들이 이용하는 각 층별 벽면 또는 계단에 건강생활정보 및 계단 이용 시 소비되는 칼로리 양 등이 표시된 인쇄물 부착, 학생 대상 교육 실시
-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부산시 연계)으로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
 - 사업대상 : 초등 돌봄교실 50교 예정
 - 사업기간 : 12주(3개월)
 - 사업내용 : 놀이형 신체활동,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과일간식 제공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 사업대상 : 서부산권역 내 초등학교 12교

사하구 (3교)	서구 (4교)	영도구 (5교)
감천초, 신남초, 옥천초	대신초, 송도초, 토성초, 화랑초	동삼초, 봉삼초, 중리초, 청학초, 태종대초

- 사업내용 : 아토피·천식 질환 학생 선별검사 및 의료비 지원(100명, 1인 5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실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등
- 비만학생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 철저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3년마다) 수립·시행
 - 학생 비만 예방·관리 1학교 1프로그램 의무 운영
 - 대상 : 초, 중, 고, 특수 모든 학교
 - 운영방법 : 학교 자체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줄넘기, 스포츠클럽, 걷기, 기타 학교체육 연계), 지역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 학생 비만도 전수조사 실시 : 연1회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로 같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교내 판매 금지
 - 비만예방 등 학생건강관리 활용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적극 활용
 - 학교보건, 학교급식, 학교체육, 교육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12~2014 창의경영 건강증진모델연구학교 운영자료집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 탑재
- ※ 체육·급식 분야 Good SMILE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시행 예정

기본방침

- 구강질환자의 경우 건강생활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함
- 치아 질환은 한 번 나빠지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공통점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현 황

- '17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24.7% < 고등학교 50.0%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36.0%(전국 38.5%)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26.1%)보다 여학생(46.8%)의 칫솔질 실천율이 훨씬 높음
 - 서울(21.8%), 인천(31.4%), 강원(34.6%), 부산(36.0%) 순으로 대도시 실천율이 극히 낮음
- '17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구강질환 증상 경험률[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57.6% < 고등학교 62.2%
 - 중학교 1학년의 구강질환 증상 경험률이 54.0%로 높으며, 이후에도 고등학교 3학년의 63.0%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 증가 추세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57.3%(전국 60.1%)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51.7%)보다 여학생(63.6%)의 구강질환 증상 경험률이 더 높음
 - 대구(55.9%), 세종(56.9%), 부산(57.3%)순으로 낮음

⇒ 초등학교 구강검진사업을 부산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시행한 효과로 분석

○ 학교 양치 전용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보건소 지원)

구분		학교명
양치 전용시설	초등	당감초, 성서초, 성전초, 연학초, 송운초, 개금초, 동원초, 개화초, 동양초, 선암초, 가평초, 개림초(12교)
구강 보건실	초등	구남초, 개포초, 교리초, 기장초, 대청초, 모라초, 부전초, 부산진초, 서동초, 정관초, 장전초, 내성초, 신금초(13교)
	특수	부산맹학교, 부산솔빛학교(2교)

추진방향

- 식후 이 닦기(양치질) 생활화 지도 강화로 칫솔질 실천율 50% 이상 목표로 추진
 - 학교 내 이 닦기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한 식후 이 닦기 생활화(습관화)
 - 기존학교 : 화장실 양치시설 설치 확대 등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보완 · 확충 ⇒ 시설부서와 적극 협의
 - 신설학교 :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설치 ⇒ 시설부서 추진
 - 칫솔보관함 설치 및 위생관리 철저
 - ※ 학교 자체 학급별 설치 권장(제16대 교육감 공약사항)
 - 이 닦기 실천 및 캠페인(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 실시 : 보건의 날(4월7일), 구강보건의 날(6월9일) 등
- 2018년도 초등학교 대표 건치아동 시상식 및 최우수 건치아동 선발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8. 4.24.(화), 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대강당(예정)
 - 학교별 건치아동 추천 방법 : 전년도 5학년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건치아동 선발결과를 2월중 건강검진결과 제출 시 추천
 - 2018년은 추천방법 변경 첫해이므로 2017년 5학년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건치아동을 2018년 2월중 추천(건강생활과 - 26182, 2017.12.26.)
 - 양치습관 형성 등을 위한 목적을 감안하여 학교별 남녀 1명씩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 안내

-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 목 적 : 초등학생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으로 치아의 유기질이 많아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높아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에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대 상 : 희망하는 학교
 - 약품지원 : 보건복지부
 - 실시방법 : 0.2% 불소용액으로 매주 1회 양치(입가심)
 - 협조사항 : 관할 보건소에 불소양치 대상, 구강보건교육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시범 설치하고, 보건소의 지원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의 예방과 진료 등 실시
 - 설치·운영학교 : 15개교
 - 운영내용
 - 학교내 구강보건실(치과용 진료대, 장비, 기구 등) 설치
 - 보건소 치과의사 주1~2회, 치과위생사 주5회 출장 진료
 - 진료내용 : 구강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유치발치, 칫솔질 교육, 개별 식이조절, 구강보건교육 등
- 초등학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부산시 사업)」 협조
 - 부산시 예산(4억원- 시비 50%, 구비 50%)으로 2018년 지속 추진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약 8,000명(대상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등
 - 지원단가 : 기본 진료비(40,000원/1인)
 -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구·군, 보건소 등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 대상학생 신청 및 참여 동의 후 치과 방문하지 않는 아동(학부모) 참여 독려

기본방침

-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현황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 2013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국가전체 진료비의 35.4%(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 학생 건강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 생활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 운영)
 - －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위한 시도지정 연구학교 운영('15년 14교, '16~17년 20교)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 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변학교로 건강증진학교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교 : 전국 32교, 부산 2교(청학초, 부산진중)
 - 각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보건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학교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 학교에서 건강증진학교 운영 모형을 적용하여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워크숍,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우수사례 공유로 건강증진 학교 일반화 추진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II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2. 학교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리
3. 환경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및 소음 피해 예방
4.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5. 학교 석면 안전관리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²⁾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현황

- 학교에 정수기 설치 제한 및 부적합 정수기 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설치 요구 증가,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정수기 설치 대수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학교 정수기 설치 현황(부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2013년	2,517	1,782	2,444	144	6,887
2014년	2,684	1,925	2,619	136	7,364
2015년	2,679	1,862	2,455	123	7,099
2016년	2,783	1,872	2,507	127	7,289
2017년	2,904	1,918	2,532	128	7,482

추진방향

가. 먹는 물의 공급 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 정수기 미설치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가급적 끓인 물 제공
-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설치 제한 및 위생관리 철저

2) “먹는 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함

- 정수기는 사용인원, 사용량,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³⁾
 - 정수기 설치 권장기준 : 초등학교 6학급당 1대, 중·고등학교 4학급당 1대
 - 정기(분기 1회) 수질검사 및 청소·소독·필터 정기 교체,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비치 철저
 -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원수로 정수기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균 처리 장치(오존살균장치, 염소 투입장치 등) 설치 등 안전 확보
- ※ 오존살균장치 시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나. 먹는 물 수질검사 철저

구분	대 상	조사항목	조사주기	관련법규
지하수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학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전항목 (46항목)	연1회(1분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 규칙”
		①일반세균 ②총대장균 ③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 ④암모니아성질소 ⑤질산성질소, ⑥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매분기 1회 (2분기~4분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 규칙”
정수기	학교 내 모든 정수기 ※ 냉·온수기(먹는샘물)는 수질 검사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①총대장균군 ②탁도 계 : 2개 항목	분기 1회 (3개월내 실시)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저수조 (물탱크)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학교 ※ 소방용수 또는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해당됨.	①탁도, ②수소이온농도, ③잔류염소, ④일반세균, ⑤총대장균군, ⑥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 계 : 6개 항목	연 1회 이상 (전년도 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내)	“수도법 시행규칙”
옥내급수관 (정체수)	준공검사(급수관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 경과 학교	①탁도 ②수소이온농도 ③색도 ④철, ⑤납, ⑥구리 ⑦아연 계 : 7개 항목	2년 주기	“수도법 시행규칙”

* 수질검사기관(부산·경남 민간업체 기준) [참고자료 6]

3) 정수기 1대당 연간 40만원 정도의 관리비 소요

다. 정수기 관리대책

-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기준 완화에 따라 위생관리가 강화됨
 - 설치 및 관리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준수
 - 설치 금지장소(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 설치된 정수기는 적정장소로 이전
 - 정기 수질검사·필터 교체,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소독·청소 실시(이 경우 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방학동안 미사용 정수기 특별 관리 : 고인 물 빼고 내부 청소 후 사용
- 온수제조기(축열식 물 끓이기 기구 등) 등 위생 관리 철저
 - 온수제조기는 가급적 사용자제, 불가피하게 사용 시에는 위생관리 철저
 - 정수 기능을 포함한 음수기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 저수조 및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 온도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및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확인
-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
 -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기록 관리
 - 대상 : 학교 내 설치된 모든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 위생관리 담당자 명기, 정수기 설치장소, 관리번호, 필터교환 및 청소·소독의 구체적 작업 내역, 수질검사 결과 기록 관리
 - ※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서식 [참고자료 7]
 - 정수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 ☞ 부적절한 사례 : 행정실 보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 필터명 불명확(A필터, B필터)
 - 정수기 관리업체 계약 시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제작 및 관리” 조건 명시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사항

연 1회 부적합인 경우	• 즉시 사용 중단, 위생관리 개선조치 후 재검 실시 - 재검결과 '적합' 판정 시 사용 가능 - 재검결과 '부적합' 판정 시 폐기(교체) 조치
연(4분기) 중 2회(누적) 부적합인 경우	• 즉시 폐기(교체) 조치

예시) 「2017년 3/4분기 1차 부적합(2차 적합) → 2018년 2/4분기 1차 부적합」인 경우 ⇒ 폐기(교체) 조치

- 교육지원청 주관 불시 수질검사 실시
 - 시기 : 2018. 3월~12월
 - 대상 : 교육지원청별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수의 10%이상 표본 선정 실시
(교육지원청별 세부계획 수립)
 - 검사 방법 :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불시에 학교 방문하여 채수 및 봉인
(학교 관계자 참석) 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채수병은 교육지원청에서 구입
 - 불시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학교의 당해분기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함
 - 불시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 검사항목 및 비용지급
 - 검사항목 : 총대장균군, 탁도
 - 비용지급 : 해당학교 →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라.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 조치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철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기준 : 반기 1회(연 2회) 실시 [비음용 저수조⁴⁾는 제외]
 - 저수조 청소는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 실시하거나 학교 자체 인력으로 실시한
후 청소·소독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보관(2년)하여야 함
 - ※ 학교 자체 실시한 경우 : “청소 전·중·후”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청소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보관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6의2 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실시(저수조 청소업자 대행 가능)하고, 점검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참고자료 8]

4) 비음용 저수조 : 소방용수 또는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를 말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대상 포함)

-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조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4,5]
 - 저수조를 거쳐 먹는물을 공급(학교급식, 정수기 연결 등 포함) 하는 학교는 연1회 이상 공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학교 홈페이지 가능) 또는 가정통신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
 -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함
 -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기준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옥내급수관 관리 대책[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정기 실시기준

구 분	내 용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일반검사	기초검사 +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7개항목)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 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 기로 실시	- 공인 수질검사기관 의뢰 - 기준초과 시 조치사항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기준 초과할 경우 급수관 세척(다만, 아연도강관은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수도관 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함)
전문검사	수질검사 기준 2회 연속 초과하거나 수질 검사 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할 경우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 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 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 -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하며, 전문검사결 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 려울 정도로 노후한 경우 급수관 교체

마. 지하수 관리대책

-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용도로 맞게 사용
 - 먹는 물 용도로 신고한 지하수는 정기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철저
 -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생활용수(조경용·소방용 등)로 신고한 지하수는 먹는 물로 이용 금지
- 관련기관(상수도사업본부 등)과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 조기 인입 적극 추진

- 46개 전항목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감사원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 적합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끊어서 공급

바. 학교 먹는 물(지하수, 수돗물, 정수기 물) 수질검사 시료 채수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 옥내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 채수는 학교 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봉인함을 원칙으로 함
- 수질검사기관 관계자가 방문하여 채수하는 경우에는 학교관계자가 채수과정에 입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해당 사항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17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사. 학교 먹는 물 관리실적 등 보고

- 학교 먹는 물 관리실적 : 분기별 1회 [보고서식 10]
- 학교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관리실적 : 연1회 [보고서식 11]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학교의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연1회) 적합 여부 자체 검토 후 보고

기본방침

- 학교 실내환경 및 공기질은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측정결과는 공개(정보공시 대상)
- 청결하고 위생적인 교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와 청소를 강화하고 교실의 각종 건축자재나 비품 등으로부터의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현황

-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학교 실내공기질 및 실내환경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괄 지원하였으나, '14년도부터는 학교 자체 외부 측정전문업체 용역 의뢰 실시토록 변경
- 2017년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 정기점검

(단위 : 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407	308	174	144	17	1,050
점 검 학교수	실내환경	403	308	174	144	17	1,046
	공 기 질	403	308	174	144	17	1,046
	일반환경	403	308	174	144	17	1,046

* 휴원 중인 4개 유치원 점검 미실시

- 특별점검

(단위 : 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23	13	3	1	0	40
	점검 학교수	23	13	3	1	0	40
증·개축	대상 학교수	3	21	10	7	0	41
	점검 학교수	3	21	10	7	0	41
기 타 (리모델링)	대상 학교수	48	140	82	59	7	336
	점검 학교수	48	140	82	59	7	336

- 신축학교 점검

(단위 : 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대상 학교수	12	2	2	0	0	16
점검 학교수	12	2	2	0	0	16

○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2차 개정판) 적용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건강생활>학교보건>201번 자료

추진방향

○ 교사(校舍)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교사(校舍)내의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 (소속 교직원 1인이 전담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수지정)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조치
- 학교환경위생 관리자 및 교육청 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실시
 - 참석대상 : 유치원, 초·중·고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 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 예정(추후 계획 알림)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 철저

- 일상점검(육안 점검)은 학교 자체 실시하며,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2014년도 부터 학교장 책임하에 외부 측정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실시
(관련공문 : 평생교육체육과-12787, 2013.12.19.)
- 점검기준

구 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일상점검	매 수업일 (1회 이상)	매 수업일에 1회이상 실시하며, 환기의 적정성, 밝기의 적정성, 온·습도의 적정성, 소음, 공기질의 적정성, 음용시설 등 청결성, 청소 항목 점검 * 형광등, LED등 불량 여부, 천장 텍스 훼손여부 중점 점검	육안을 통해 일상적으로 확인 - 교실→담임교사 및 수업 담당교사 - 기타시설→환경위생관리자 [참고자료 9]
정기점검	연1회 이상	실내환경(조도, 소음, 온·습도), 실내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12개 항목) 기타 환경위생(방역소독, 먹는물, 화장실, 매점 등)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 방법으로 점검(측정 전문업체 위탁) [참고자료 10]
특별점검	필요 시	학교 신축·개축·개수 시,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 구입으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점검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등 구체적 방법으로 점검(측정 전문업체 위탁)

- 실내환경 및 공기질 정기점검 결과는 ‘학교알리미(교육정보공시서비스)’에 등재토록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정보공시 항목 : 소음, 조도, 환기(이산화탄소 측정결과로 대체), 미세먼지
- 실내공기질 및 환경위생 점검(정기·특별) 결과 제출
 - 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제2항,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제출방법 : 6월말까지 점검 결과는 1차 제출, 그 이후 점검 결과는 2차(11월) 제출

기관별	제출 서류	제출기한
학 교	①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 1부 [보고서식 12-2] ②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③ 측정상황에 대한 근거자료(측정실별 사진) 1부	- 1차 : 6. 27.까지 - 2차 : 11.30.까지
교육지원청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보고서식 12-1]	- 1차 : 7. 4.까지 - 2차 : 12.21.까지

-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1차 측정 교실 포함하여 재측정)
 -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_{2.5})추가 → 정기점검 시, 초미세먼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 및 점검현황 모니터링
 -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 시, 학운위 위원(학부모 포함) 참관 등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제출서식 개선(재측정 단계별 적합여부 확인)
-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 설립·인가(유치원 포함)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 신설 학교의 경우, 개교 전 특별점검 결과 확인 철저('17년 교육부 감사 지적)

- 학교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설계 단계부터 확인)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 질 측정
 - 측정항목(7개)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개별유기화합물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⁵⁾ 준수
 - ※ 특히, 기숙사를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반드시 개별유기화합물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초과여부 확인(100실 이하 2지점, 100실 이상 3지점, 이후 100실 초과시 1지점 추가)
 - ※ 기준초과 시 조치 :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
- 민간투자사업(BTL) 학교의 실내환경 및 공기질 점검 철저
 - BTL 관리업체에서는 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연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준공 3년 이하의 학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포함) 및 결과 보고
 - 점검결과 기준 미달(초과) 학교는 개선조치 후 재검 실시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서 시료 채취 및 측정 실시
 - 실내환경 및 공기 질 외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은 항목별로 연 1~4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 관계자(환경위생관리자)의 협조로 실시
 - 점검결과 기록 및 보관, 보고 등은 일반학교와 동일함
- 교사 안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유지기준의 적용시설 대상 확대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철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2016.9.1.], 시행[2017.3.1.])
 - 라돈 유지기준 대상시설은 기존 ‘지하교실’ → ‘1층 이하 교실’로 확대
 - ※ ‘지하교실’이 있는 경우, ‘지하교실’ 측정
 - 석면 유지기준 대상시설은 기존 ‘석면 단열재’ → ‘석면건축자재 50m²이상 또는 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 시설로 확대
 - 특히,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위해성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 ※ 병설유치원의 경우, 라돈 및 석면 본교와 별도로 점검 실시

5) 벤젠(30 μ g/m³ 이하), 톨루엔(1,000 μ g/m³ 이하), 에틸벤젠(360 μ g/m³ 이하), 자일렌(700 μ g/m³ 이하), 스티렌(300 μ g/m³ 이하)

- 냉·난방기기 위생상의 조치 강화
 - 필터 등 정기적인 소모품류 교체 및 기기 청소 등을 통한 위생상 안전조치 강화
-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생 개선노력 강화
 - 공기질 관련 사항은 대부분 적절한 환기와 청소 등을 통해 개선 가능
 - 매 수업시간마다 환기 실시 원칙
 - 창을 항상 5~20cm 정도 열어 두기
 -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을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개방
 - 휴식시간 중 ‘환기 송’ 활용 권장
 -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건강생활>학교보건>214번 자료
 - 공단지역 등 외기 환경여건 열악지역 학교는 자체 청소 강화프로그램 운영
- 화장실 위생관리 철저
 -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17.5.8. 개정,'18.1.1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사항 준수(시교육청건강생활과-19101, 2017.10.16.)
 - 대변기 칸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신설)
 - 화장실 출입시 청소·보수를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신설)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관리지침 준수(시교육청건강생활과-1940, 2017.2.6.)
 - 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기록 관리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연1회(7월 중)

기본방침

- 예기치 않은 각종 환경오염(황사,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학습권 보호
- 학교주변의 도로, 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학습권 보호

현 황

-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 각종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특정 시기나 계절과 상관없이 불특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각급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미흡
 -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7월, 환경부)」 및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2017.6월, 교육부)」의 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 미흡으로 선제적 대응 곤란
 - 실시간 대기 정보 공개(<http://www.airkorea.or.kr>) 및 미세먼지 및 오존 담당자 경보시스템을 통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심 부족
- 학교 담장 개방, 학교주변 도로 확장 건설 등으로 도로변 학교의 교통소음 피해 우려
 - 부산지역 소음피해 학교의 원인은 대부분 교통소음이며, 피해가 많은 학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신설학교의 경우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고, 이 중창 및 냉난방 시설 설치 등의 효과로 소음 영향 감소
- '17년 공기질 취약 우려지역 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85교) 및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13대) 설치 시범사업 추진
 - 공기정화장치 운영 안내서 [참고자료 11]

추진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 요망
 - 경보 발령 시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비상대책반 운영
 - 등·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 권고, 피해상황 및 학교별 조치사항 (휴업 등) 파악, 상황 전파 및 보고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적용상황 자체점검 실시 [참고자료 12]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 :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업무자료실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 각급학교 조치사항

구분	발령(발생) 요건	조치사항
고농도 예보	PM10 24시간 평균 $81\mu\text{g}/\text{m}^3$ 이상으로 예상 될 때, 또는 PM2.5 24시간 평균 $51\mu\text{g}/\text{m}^3$ 이상으로 예상 될 때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고농도 발생	PM10 $81\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지속인 때, 또는 PM2.5 $51\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지속인 때,	미세먼지 농도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주의보 발령	PM10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인 때, 또는 PM2.5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인 때,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경보 발령	PM10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인 때, 또는 PM2.5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인 때,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 해제	주의보 : PM10 $100\mu\text{g}/\text{m}^3$ 미만, PM2.5 $50\mu\text{g}/\text{m}^3$ 미만 경보 : PM10 $150\mu\text{g}/\text{m}^3$ 미만, PM2.5 $90\mu\text{g}/\text{m}^3$ 미만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

각급학교	조치 후 3일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업무포털자료집계시스템) -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등 : 건강생활과-12467('17.7.6.) 공문 참조
교육지원청	학교 보고 취합 후 5일 이내 시교육청(건강생활과) 보고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자료집계 개설

※ 세부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 참조

-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96교
- 공기정화장치 시범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 85교
-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 10교
- 미세먼지 대응교육 선도학교 운영 : 20교

-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준수 철저
 - 매뉴얼 적용 기본 원칙
 - 업무 담당자는 최대한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재난상황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되 적극적으로 대응
 -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위기경보수준의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적절히 경보수준을 조절함
 - 황사의 피해내용
 - 미세먼지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 건강 피해
 -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초래(실외교육, 휴업 등)
 -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미세먼지 및 중금속의 증가
 - 대기 혼탁에 따른 가시도 저하로 항공기, 여객기 운행 장애 등
 - 황사 위기 경보 수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분류
 - 황사 예보 및 특보 발령(기상청, 환경부)
 - 황사 예보 : 옅은 황사, 짙은 황사, 매우 짙은 황사
 - 황사 특보 : 황사 주의보[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4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황사 경보[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 매뉴얼 p.29 참조
 - 황사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대책 중점 실시
 - 황사 특보 해제 이후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등 실시
 - 황사 예보(강한 황사) 및 특보 발령 시 조치

발령단계		조치사항
황사 예보(강한 황사)		- 대책반 설치·운영(기상청 발표상황 수시파악) - 비상연락망 가동 준비
황사특보	주의보	- 비상연락망 가동 - 실외·야외활동 자제(방진마스크 등 착용 조치)
	경보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 지역 및 적용 대상학교 결정

- 교사(校舍)내 소음 등 대기오염(악취, 분진, 먼지) 피해 실태조사
 - 조사기간 : 3~4월

- 조사대상 : 초·중·고(특수, 각종학교 포함) 전 학교
- 조사방법

구분	시기	내용
1단계	3월	<실태조사> • 제출내용 : 외부소음 등 대기오염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현황 제출 • 제출기한 : 4월 30일까지(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만 제출) • 제출방법(학교→교육지원청) : 자료집계시스템
2단계	4월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조사> • 조사대상 : 소음, 대기오염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학교 • 조사방법 :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1차 현장 확인 조사(피해 원인 및 피해 정도, 소음의 경우 소음도 측정), 악취·분진·먼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 조사 협조 요청 [참고자료 13] • 조사결과 보고(교육지원청→본청) : 5월31일까지[보고서식 13]

○ 소음 및 악취, 분진 등 피해 원인별 방지대책 추진

- 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방음대책 추진
 - 근거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 소음 피해 방지대책

- 1)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교육지원과, 교육시설과>
- 2)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3) 소음 피해 교실 용도 재배치, 이중창 설치(보완), 학교 담장 방음림 조성 등
- 4) 방음벽 시설 설치 시에는 도시미관과 조망권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방음시설(나무방음벽, 투명방음벽, 방음림 조성 등)을 설치
- 5) 기존의 방음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청소, 파손 복구, 안전도 확인 등
- 6) 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군·구와 협의 및 요구
- 7) 피해 원인별 추진사항
 - ① 학교주변에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경우
 - ⇒ 학교장은 원인제공기관(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 요구
 - ② 학교주변 건설공사(아파트 건축 등)로 인한 경우
 - ⇒ 학교장은 관할구(군)청 및 시공자에게 피해 발생신고 및 피해방지 대책 요청
 - ③ 학교주변의 공장, 이동행상에 의한 확성기 등으로 인한 경우
 - ⇒ 학교장은 원인 발생 즉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조치
 - ④ 신설학교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 피해
 - ⇒ 교육청에서 자체 대책 강구

- 악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 방지대책
 - 피해 발생 시 학교장이 관계기관(시·군·구청 환경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
 - ※ 필요 시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하여 합동 대책 강구 : 학습환경 피해 조사 등 실시(교육지원청 협조)
 - 피해 원인 규명 노력 및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요청
- 학교 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 철저
 -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교육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분리배출 및 종량제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소각시설이 아니면 교내 소각 금지
 - 학교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특히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폐기
 -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정장소에 수거하여 일괄 위탁처리 하는 방안 마련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의 규정 준수

기본방침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내도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포함되므로 구내 매점과 식품자동판매기의 판매 식품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으로 판매토록 지도
 - 2014년도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⁶⁾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⁷⁾의 판매가 금지됨

현황

- 학교 매점 현황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2017. 12월 기준)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매점설치 학교수	우수판매업소		
			지정 학교수	지정율 (%)	미지정 학교수
중	174	64	64	100	0
고	146	93	93	100	0
계	320	157	157	100	0

- 최근 들어 매점 미설치 학교와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류를 판매하거나 커피 자동판매기를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하는 사례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필요
 -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빵류, 과자류, 음료 등) 대부분 자판기 판매

추진방향

가.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운영하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7)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어린이 기호식품⁸⁾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별 프로그램’ 바로가기(<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 제품 포장지의 ‘영양성분 표시’ 내용 입력
- 비만 예방 관련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 등), 인스턴트식품(즉석 면류, 즉석섭취식품류), 김밥, 핫도그, 커피류 등 판매 제한
- 학생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식품도 판매 제한

나. 학교장은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판매되도록 지도

구 분	점검시기	점검자	중점 점검내용
일상점검	매일	담당자	[참고자료 14] 서식 참조
정기점검	연2회	담당자, 학생, 학부모	[참고자료 15] 서식 참조

다. 학교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 시 업체(업주) 제재방안 마련

- 학교 매점 유상 사용허가(임대차 계약) 시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포함
 - － 교육청 또는 구청 위생점검 관련 동일한 사례로 연2회 이상 적발 시 제재조치 내용 등
 - － 학교 매점 업주 대상 교육 실시 : 위생관리, 허가조건, 판매제품 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준수, 학교건강증진기본방향 내용 준수 등
- 부정·불량식품 판매 상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학생 대상 모니터링반(2인 1조) 구성 및 상시 운영으로 자율감시 기능 강화
※ 기본교육은 학교 관계자가 실시 후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하는 방안(권장)
 - － 점검요령 : 학교 매점 위생 점검표」 서식을 참조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내용 등 변경 가능

8)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

라. 학교 매점 임대차 계약 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시·군·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 지정 의무화

- 입찰(계약)조건 시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3.6.17.)]
- 우수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의한 위생 감시활동 제공

마. 각급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시

- 식품 자동판매기가 미설치된 학교에서 새로 설치코자 할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교직원, 학생(대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설치여부 결정
 - － 설치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연1회 위생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구내 매점 설치학교와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학교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주관 위생 점검 연1회 실시(자체 점검계획 수립)
 - － 지적사항 시정·개선조치

바.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또는 폐쇄 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기본방침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현황

- 『학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석면 건축물 전수조사 2014년 말 완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조사결과 DB 구축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 학교석면 건축물 현황

(2018.3.1.기준)

구분	전체 학교수	석면 현황		무석면 현황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유치원	411	161	39.2%	250	60.8%
초등학교	308	140	45.5%	168	54.5%
중학교	174	87	50.0%	87	50.0%
고등학교	144	96	66.7%	48	33.3%
특수·각종학교	17	3	17.6%	14	82.4%
합계	1,054	487	46.2%	567	53.8%

-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적용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건강생활>학교보건>185번 자료

추진방향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 준수 철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교육 이수
 - 최초 신고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신고하되, 변경신고는 인사 이동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는 10일 이내 신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로 신고서 제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부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 위탁교육 기관에 수강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학교장(건축물 관리인)이 부담함

■ 교육부 지정 석면 안전관리 위탁교육 기관

- － 전문대학교(<http://asec.sunmoon.ac.kr>) : 충남 아산 소재
- － 대한산업안전협회(<http://www.safety.or.kr/>): (본부)서울, (부산지회)부산진구
- － 화학안전보건협회[(구)대한석면관리협회](<http://www.asbestos.or.kr>) : 서울 중랑구 소재

※ 위탁교육기관 변경 고시 예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역할 준수 철저

-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 작성·관리
- － 학교 자체 소규모 보수공사 실시에 필요한 보호 장구류 등 준비
- － 석면 해체·제거공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 조치방안 강구
 -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및 해체·제거작업 관리 기준 이해, 해체·제거 이후 석면 잔재물 발견 주요 부위 및 청소 상태 확인 등
-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관련 정보 제공 및 감시·감독 등
 - ☞ 석면학교에서 무석면학교로 전환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해제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검토 및 개·보수내역 등 NEIS 입력 철저

-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재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1) 균질 부분의 종류 및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료를 적절하게 채취했는지 여부
- 2)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적절성 확인(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물리적 손상상태, 사용빈도 등)
- 3)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석면의 위치, 건축자재의 인식표, 채취시료 관련정보 작성상태 등)

-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입력 이후 발생된 변경 내역(해체·제거 등)은 NEIS에 반드시 반영

- 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시설과(시설지원과)에서는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석면 제거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석면지도 자료에 반영 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로 통보

- 위해성 평가는 6개월 단위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NEIS 입력·관리
(매년 상·하반기 차수 신규 생성 예정)
- 「석면안전관리법」 미 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 숙지 철저
 - 제44조(벌칙)~제49조(과태료)
-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준수 철저('17.10.10, 4차 개정)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등급 등 공지 및 홍보

나. 학교 석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교육시설과, 시설지원과 협조)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천장텍스 교체공사 시 해당학교의 천장텍스 외의 석면건축자재(밤라이트, 개스킷 등)에 대한 100% 제거 적극 협조
 - 석면 학교 중 석면 잔여면적이 적은 학교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교육 지원청별 석면학교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
 -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시설 실태조사 후 필요시 긴급 개·보수 등 우선조치
 - 석면 해체 제거를 위한 예산 편성 시 석면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50㎡미만 석면 건축자재 보유학교(법상 무석면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 석면을 제거하여 100% 무석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건축물 안전관리 조치
 - 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 보존하여야 함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철저
 - ※ 석면제거 안내 표지판 설치, 관련 법령 철저 준수로 민원 발생 예방
 - 석면조사가 누락된 건물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된 건물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 실시

■ 주요 누락사례

- ① 특별실이나 유치원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제거하지 않은 채 무석면 천정재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시공하는 사례
- ② 옥상 물탱크 및 지하 보일러실 배관 접합부 등에서 사용된 개스킷류를 제외하는 사례
- ③ 학교 부속 건물 중 일부(창고, 경비실 등)를 누락하는 사례 등

-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관리 현황,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교 석면조사 보고서 적극 활용 및 사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석면조사 결과 설명

2018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건강증진 기본방향

학교보건 유관기관과의 협력

III

1.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2.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
3.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증진 사업 적극 참여
4. 2018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4차)



기본방침

- 우리교육청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
-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학생들 중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
- 난치병 학생과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 실현

난치병 학생현황

(2017년 4월기준)

구분	백혈병	심장병	암 (종양)	뇌종양	근이양증	혈우병	재생불량성 빈혈	기타	계
학생수	48	139	38	24	24	13	10	303	599

※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누락된 학생이 있을 수 있음

지원실적

(단위 : 천원, 명)

구 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모금액	203,592	183,998	344,660	345,804	243,676	214,654	235,370
지원액	196,400	173,970	270,432	263,500	257,100	136,000	294,500
지원인원	75	68	93	103	88	88	69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	
모금액	237,693	240,186	216,957	288,864	221,937	2,977,391	
지원액	191,000	240,000	187,500	137,500	172,000	2,519,902	
지원인원	60	76	57	45	56	878	

추진방향

- 난치병 학생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날개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 2018년도 성금모금 운동 전개
 - 모금기간 : 연중
 - 대상 :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 성금모금 방법

사랑의 날개 (봉투모금함) 모으기	- 모금대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모금기간 : 연중 • 1차 중점기간 : 2018. 3.~6. 30 • 2차 중점기간 : 2018. 7.~11. 30 - 모금방법 : 봉투모금함을 활용한 모금 * 세부계획 추후 통보
사랑의 날개(후원) 보내기	- 모금기간 : 연중 - 모금대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직원 및 학교별 학생, 교직원, 기타 관공서, 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 등 - 모금방법 • CMS 신청 : 매월 일정액(1구좌당 5천원 - 희망하는 구좌 자율 신청)을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정기계좌이체(CMS) • 사랑의 계좌기부 :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 및 법인 등 누구나 • ARS 전화 걸기 : (☎ 060-700-1050) 전화 1통화당 2,000원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01-000144-1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농 협 919-01-215783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국민은행 107201-04-089167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기본방침

- 부산광역시 연계 초등학교 학생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 연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의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방향 설정

현황

- 2017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현황

유치원	초	중	고	계
56	48	4	4	112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교

-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인증 안심학교 현황 : 13교

※ 학교명 : 학장초, 감전초, 월평초, 죽성초, 토현초, 센텀초, 좌산초, 신남초, 송도초, 청룡초, 교리초, 옥천초, 감천초

추진방향

- 부산광역시 연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의 주요 활동
 -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학생 선별 및 관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 교사, 환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상담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2018 안심학교 선정 : 추후 부산광역시 연계 공문 발송하여 희망학교 선정
 -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관리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각 구·군 보건소

기본방침

- 학교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현 황

- 부산시내 각 구·군 보건소의 2018 학생 건강증진 사업 현황 [참고자료 16]
 - 비만예방, 금연·금주교육, 구강보건, 영양교육, 아토피 예방 등

추진방향

- 각급학교에서는 지역보건소 학생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개선

목 적

-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 현황과 수준 파악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중1~고3학년(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 조사내용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기타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주관 : 질병관리본부(세부계획 추후 통보)

보고사항

IV

1. 학교보건교육실시 현황
2.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4.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5.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6. 학생 시력검사 현황
7.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9.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10.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
11. 학교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관리 실적
12.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13. 소음 및 대기오염 피해 실태조사표





○ 보고 목록

번호	제 출 사 항	제출기한	제출대상	비고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 학교 : '18. 12. 3. • 교육지원청 : '18. 12. 10.	전체학교	p.70
2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 학교 : '18. 4.30. • 교육지원청 : '18. 5. 10.	전체학교	p.71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학교 : '19. 1. 28. • 교육지원청 : '19. 2. 1.	전체학교	p.72
4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 학교 : '19. 1. 28. • 교육지원청 : '19. 2. 1.	전체학교	p.73
5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학교 : '19. 1. 28. • 교육지원청 : '19. 2. 1.	전체학교	p.74
6	학생 시력검사 현황	• 학교 : '19. 1. 28. • 교육지원청 : '19. 2. 1.	전체학교	p.75
7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연중(수시)	전체학교	p.76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연중(수시)	전체학교	p.77
9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학교 : '18. 6.29. • 교육지원청 : '18. 7. 6.	전체학교	p.80
		• 학교 : '18.12.21. • 교육지원청 : '18.12.28.		
10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	• 학교 : 매분기말 • 교육지원청 : 매분기말 기준(익월 2일)	전체학교	p.81
11	학교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관리실적	• 학교 : '18. 11. 30. • 교육지원청 : '19. 1. 4.	전체학교	p.83
12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 학교 : '18. 6.27. • 교육지원청 : '18. 7. 4.	전체학교	p.84 p.86
		• 학교 : '18.11.30. • 교육지원청 : '18.12.21.		
13	소음 및 대기오염 피해 실태조사표	• 학교 : '18.4.30. • 교육지원청 : '18.5.31.	피해가 있는 학교만 보고	p.89

* 제출처 : 각급학교 → 해당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엑셀서식 보고)

○○○교육지원청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급별	학교수	학년도 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도 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보건교사 배치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 학년도 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 제출기한 '18. 12.10(당해 학년도 내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 **수업시수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

2. '보건', '성교육' 과목 선택교과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보건												
성교육												

- * 창체시간 이외의 선택(교양) 과목 운영학교
- * '성교육' 과목은 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선택과목을 말함
- * 제출기한 '18. 12. 10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실 면적(66㎡이상) 충족 현황		보건실 설치 학교수		
		충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18. 4. 1. 기준 현황

* 미충족 학교별 면적 현황 제출

2. 학교보건실 설비·기구 충족 현황

구분		초	중	고	특수	계
전체학교수						
필수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권장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계						

*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

3. 학교보건교육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수				보건교육실 미설치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보건실과 병용	기타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18. 4. 1. 기준 현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구 분		성별	학생 검진율			학교 검진율			검집비용 (천원)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완료비율 (%)	검진대상 학교수	검진완료 학교수	완료비율 (%)	
초등 학교	1학년	남							
		여							
		계							
	4학년	남							
		여							
		계							
	계	남							
		여							
		계							
중학교 1학년		남							
		여							
		계							
고등학교 1학년		남							
		여							
		계							
특수학교 <대상학년>		남							
		여							
		계							
기타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작성요령

- ① 학생수는 보고일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작성(전출은 제외, 전입은 추가)
- ② 검진비용은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수를 기준으로 작성
- ③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보고는 '자료집계시스템'이용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년도				
☐ 초	☐ 중	☐ 고	☐ 남	☐ 여

기관명 :

구 분			초등학교						중 1학년	고 1학년	특수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근·골격 및 척추												
눈	시 력	교 정 대 상										
		교정한학생수										
	색 각 이 상		공란							공란		
눈 병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귀	청 력 장 애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구강	치 아 우 식 증											
	치 주 질 환											
	부 정 교 합											
기관 능력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비뇨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계 질환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그 밖의 질 환											
혈압	고 혈 압											
소변	요 단 백											
	요 잠 혈											
검 사 대 상 자 수												
검 사 인 원 수												
비만도	체질량 지수	정상										
		저체중										
		과체중										
		비만		공란	공란		공란	공란				
	상대 체중	정상										
		경도										
		중등도										
		고도										
각종 검사	혈액(Ⅰ)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AST, ALT										
		검사인원수										
	혈액(Ⅱ)	혈 색 소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검사인원수										
	간 염	B형간염				공란				공란		
		검사인원수										
	홍 부 방사선	결 핵										
		검사인원수										
※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2. 시력의 교정대상은 어느 한 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3. 검사인원은 보고일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작성(전출은 제외, 전입은 추가) 4. 검사대상자수 및 검사인원수의 “초등학교 2·3·5·6학년” 해당란에는 구강검사의 검사대상자수 및 검사인원수를 기재												

- ※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2. 시력의 교정대상은 어느 한 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3. 검사인원은 보고일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작성(전출은 제외, 전입은 추가)
 4. 검사대상자수 및 검사인원수의 “초등학교 2·3·5·6학년” 해당란에는 구강검사의 검사대상자수 및 검사인원수를 기재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년 도 ☐ 초 ☐ 중 ☐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cm)		남자						
		여자						
몸 무 계 (kg)		남자						
		여자						
비만도 (체질량 지수)	저체중	남자	()	()	()	()	()	()
		여자	()	()	()	()	()	()
	정 상	남자	()	()	()	()	()	()
		여자	()	()	()	()	()	()
	과체중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 만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만도 (상대 체중)	정 상	남자	()	()	()	()	()	()
		여자	()	()	()	()	()	()
	경 도	남자	()	()	()	()	()	()
		여자	()	()	()	()	()	()
	중등도	남자	()	()	()	()	()	()
		여자	()	()	()	()	()	()
	고 도	남자	()	()	()	()	()	()
		여자	()	()	()	()	()	()
검사인원수 (명)		남자						
		여자						
		계						

※ 작성방법

- 이 통계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키·몸무게의 평균치를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비만도의 각 항목(저체중, 정상..., 정상, 경도 등)에는 검사인원수 대비
각 항목의 해당 학생수에 대한 백분율을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고, 해당학생수를 ()에 기재합니다.

※ “나이스 → 보건 → 학생건강현황통계관리 → 신체발달통계생성·조회”에서 통계 조회



학생 시력검사 현황

학교 급별	학년	성별	전체 학생수	검사자수	시력이상		비고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수	
초	2학년	남					
		여					
		계					
	3학년	남					
		여					
		계					
	5학년	남					
		여					
		계					
	6학년	남					
		여					
		계					
중	2학년	남					
		여					
		계					
	3학년	남					
		여					
		계					
고	2학년	남					
		여					
		계					
	3학년	남					
		여					
		계					

※ 작성요령

- ① 대상 :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② 교정대상 : 어느 한 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 수
(안경,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한 학생 수 + 교정하지 않은 학생 수)
- ③ 교정한 학생수 : 교정대상(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 중 교정한 학생 수
- ④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제출 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이용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2018. . .)

○○교육지원청

발생 현황

발병 감염병	학교명	일자	발생환자 수		등교중지 환자수 (치료중)	완치자수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집단발병 양상 기재(학급당/전체인원 대비 발생수 등 발생추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등교중지 조치, 보건교육, 소독,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보건소 협의사항 등을 일
자별로 기재

-
-
-

보건소 조치사항 등

○ 역학조사 실시, 물품지원 등 보건소 조치사항 등 기재

-
-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18. ○○. ○○(), ○○교육청 >

◆ 보고대상

- 법정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결핵, 홍역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교육부

◆ 보고시기 : 최초 역학조사(접촉자조사) 실시 직후 1회 보고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역학조사(접촉자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장 마지막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결과를 정리하여 추가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감염병명, 발생인원 및 현재환자수, 나이스 전송여부 및 보건소 신고여부
-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경과상황 및 향후 일정, 관련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여부 등
- 등교중지 여부, 긴급 방역조치 사항 및 언론사 등 취재여부 등

■ 발생 개요

(결핵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제시된 예문으로 각각의 감염병에 따라 아래 예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학 교 명 : 시·도명 “○○학교(국·공·사립)”

○ 감염병명 : 결핵(법정 제3군감염병)

○ 발생 현황 : 확진 00명, 잠복결핵 00명

구 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교직원
확진	치료중					
	치료완료					
	계					
잠복결핵감염자 ※결핵의 경우 작성	치료중					
	치료거부					
	치료 제외자					
	계					
검사 중						

○ 주요조치 사항 :

○ 향후 계획 :

※ 언론취재사항 : 000뉴스 보도('18.00.00. 00:00) 외 00건

세부 추진현황

○ 일반현황

- 학 교 명 : ○○학교(국·공·사립), 학교장 ○○○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교육지원청)
- 규 모 : 학생 ○○명, 교직원 ○○명
- 담 당 자
 - 학 교 : 직(담당교과) / 성명
 - 교육지원청 : 직 / 성명

○ '16년 3월 8일 ○○학교에서 2학년 1반 학생(남) 1명이 결핵으로 확진(의심)되어 3월 8일 ○○○보건소에 신고 및 등교 중지

- 나이스 전송일 : 3월 8일(학교) → 3월 11일(교육청)

○ 3월 11일 현장조사 및 접촉자조사 범위 설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 일자 및 장소 : '16. 3.11/○○보건소

- 참석자 : ○○교육청 김○○, ○○교육지원청 이○○, ○○보건소 홍○○, 질병관리본부 결핵역학조사팀 박○○

○ 3월 12일 동일 학급 학생 35명에 대해 접촉자검진 시행

- (검사결과) 추가환자 2명 및 잠복결핵감염자 20명 발견

○ 3월 12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주관 : 질병관리본부(결핵조사과 김○○)

- 참석자 : 학생 ○○명, 학부모 ○○명, 교직원 ○○명

○ 4월 9일 2학년 전체 220명중 150명에 대한 접촉자검진 시행

- (검사결과) 추가환자는 없었으며 잠복결핵감염자 35명 발견

○ 4월 13일 2학년 전체 220명중 나머지 70명에 대한 접촉자검진 시행

○ 조치 및 치료현황

- 최초발견 1명은 인지 후 즉시 '등교중지'하였으며 2주간 치료약을 복용하여 전염력이 소실되어 3월25일부터 등교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추가발견 2명은 전염력이 없어 등교중지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잠복결핵 감염자 55명 중 치료를 거부한 1명을 제외한 54명은 잠복결핵 치료 중(직접복약확인(DOT)은 전원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추가 접촉자 검사결과에 따른 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

- 5월 13일 검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후 추가 보고 예정
- ※ 발생 감염병에 따라 학교에서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할 것

■ 언론취재사항

○ 4월 18일 ○○일보에서 결핵발생 및 학교 조치사항 등에 대해 유선으로 취재함
(통화자 : ○○학교 보건교사 김○○)

- 주요 취재내용 :

○ 4월 19일 ○○일보에서 ○○학교 및 관내 결핵발생현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취재함(취재대응 : ○○교육지원청 보건7급 박○○)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예방교육 실시현황 (단위 :교)

구 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예방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별도 프로그램(사업) 실시현황 (단위 : 교)

구 분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예방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 단위 : 교)

구 분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예방교육								
별도 프로그램(사업) 운영								

3. 구강관리 (단위 : 교)

구 분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예방교육								
별도 프로그램(사업) 운영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분기)

(분기 / 서면, NEIS 병행)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					
	지하수					
	계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상수도 이용교	대상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지하수 이용교	대상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대상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계	대상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					
	검사 정수기수					
	1차 적합판정수					
	최종 적합판정수					
	부적합 판정수					
	조치결과(폐기)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or 정기	대상 학교수					
	검사 학교수					
	1차 적합판정수					
	최종 적합판정수					
	부적합판정수					

5. 정수기 특별점검결과(분기)

구분		초	중	고	기타	합계
() 분기	특별점검 학교					
	특별점검 정수기수					
	점검결과 부적합 정수기					
	후속 조치	정수기 폐기조치				
		수질검사시기 조정 조치				
		채수구 등 청소상태 시정조치				
		설치장소 시정조치				
		기타				



학교 저수조(물탱크) 및 옥내급수관 관리실적

○○교육지원청

1.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총괄)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대상 학교수	수질검사 결과(1차)		재검 결과(2차)	
			적합 학교수	부적합 학교수	적합 학교수	부적합 학교수
초						
중						
고						
특수·각종						
계						

1-1. 학교별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

학교명	수질검사 해당여부	수질검사 일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후속조치 결과
			적합	부적합	
	O, X	0000.00.00		(항목 기재)	

※ 수질검사 일자 : 2016.1.1~2016.12.31. 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일자 기재

2.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현황(총괄)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대상학교수 (준공 5년이상)	수질검사 결과(1차)		재검 결과	
			적합 학교수	부적합 학교수	적합 학교수	부적합 학교수
초						
중						
고						
특수·각종						
계						

2-1. 학교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현황

학교명	옥내급수관 준공 일자	수질검사 해당여부	수질검사 일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후속조치 결과
				적합	부적합	
	0000년0월	O, X	0000.00.00		(항목 기재)	

※ 수질검사 일자 : 가장 최근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일자 기재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 교육지원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점 검 학교수	실내환경						
	공 기 질						
	일반환경						

※ 참고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 고시 제2012-24호) 제2호의 실내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 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기 관 (일반)	학교자체						
	교 육 청						
	외부기관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	적합		초	적합		초	적합		초	적합		초	적합		초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PM10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CFU/ m^3)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 m^3)																		
TVOC ($\mu\text{g}/\text{m}^3$)																		
석 먼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 m^2)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	적합		초과	적합		초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 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초과여부 기재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대상 학교수							
점 검 학교수	3월 개교						
	9월 개교						
	계						

※ 개교당시 검사실적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	적합		초과	적합		초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1차	최종	과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 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초과여부 기재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특별) 점검표

1. 개요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설립구분				교 실 수		일반 (실), 특별(실)	
전화번호				FAX 번호			
설비 현황	냉방	중앙 : 실, 개별 : 실		먹는물 시설	먹는물	상수도, 지하수, 기타	
	난방	중앙 : 실, 개별 : 실			저수조	개	
	환기	중앙 : 실, 개별 : 실			정수기	개(먹는샘물 : 개)	

2. 학교 실내환경 측정개요

① 측정일자		② 측정시간	
③ 측정장소			
④ 측정자	(소속)		(성명)
⑤ 측정조건	건축물 및 교실의 특성, 측정지점(교사 평면도에 표기) 및 환기장치 가동여부, 외기 상태 등 기재		

3. 측정지점별 측정결과

3-1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장소	검사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번호		
PM10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장소	검사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번호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m ³)														
TVOC (μg/m ³)														
석면 (개/cc)														
오존 (ppm)														
진드기 등														
벤젠 (μg/m ³)														
톨루엔 (μg/m ³)														
에틸벤젠 (μg/m ³)														
자일렌 (μg/m ³)														
스티렌 (μg/m ³)														

3-2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외 항목

검사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 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4.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점검자 :)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폐 기 물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횟수는 적당한가		
	폐기물 용기의 재질,구조 등은 적당한가		
	폐기물용기 및 배치장소는 청결한가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구내매점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는 청결한가		
	매점의 취급품목은 적정하며 관리요령을 준수 하는가		
먹는물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상 수 도 및 하 수 도	상·하수도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물탱크는 정기적 청소와 점검을 하였는가		
	우수·오수시설 설비는 제기능을 하는가		
화 장 실	청결상태, 채광·조명, 환기상태가 양호한가		
	손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가 있는가		
	비품비치 상태 및 시설설비는 고장이 없는가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 타 환경위생	청소·소독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귀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수영조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양호한가		
	입영자의 위생·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가		

※ 작성기준 : 점검결과는 우수“A”, 보통 “B”, 미흡 “C”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참조

5. 검사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및 근거자료(사진 등 첨부)

※ 첨부자료 :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측정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측정실별 사진) 각 1부



소음 및 대기오염 피해 실태조사표

1. 일반 현황

학교명	교실수		학생수		교직원수		이중장 설치 현황		냉난방시설 설치 여부	
	보통	특별					보통교실	특별실	설치년도	설치계획 년도
			남		남		실	실		
			여		여					
			계		계					

※ 보통교실수 = 학급 수

2. 소음 등 대기오염 피해 현황

구분	소음			악취			기타()		
	보통	심함	매우심함	보통	심함	매우심함	보통	심함	매우심함
피해정도 (해당란○표)									
비 고									

※ 작성요령

- ① 소음인 경우 소음원의 종류(교통소음, 철도소음, 건설소음, 생활소음 등)를 비교란에 기재
- ② ‘악취’인 경우에는 악취 발생원인(추정)을 비교란에 기재
- ③ ‘기타 대기오염’인 경우에는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인을 비교란에 기재

3. 구체적 피해 실태

- 피해 교실 수 : 전체 교실 ()실 중 ()실
-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
- 피해내용(구체적으로 기술)

4.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안)

* 학교 자체 대책, 피해 실태 정밀조사, 유관기관 협조 요청 사항 등

참고자료

V

- [자료 1]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 [자료 2]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자료 3]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 [자료 4] 학교 감염병 발생시 교육지원청 대응요령
 - [자료 5]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 [자료 6]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 [자료 7]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 [자료 8]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 기준
 - [자료 9]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일지
 - [자료 10]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설명자료
 - [자료 11] 공기정화장치 운영 안내서
 - [자료 12]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상황 자체점검표
 - [자료 13] 교사내 소음피해 현장확인 조사표
 - [자료 14]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일일 위생 점검표
 - [자료 15]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점검표
 - [자료 16] 부산관내 보건소의 2018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 [자료 17] 학교보건법령
- ※ 업무분장 관계 관련 법령 안내(발췌)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 시설·구조

번호	시설·설비 등	용도 및 시설·설비 시 유의사항
1	침대	1인용 침대 필요수 만큼 확보한다.
2	실간 구분시설	각 실간 구분은 천장 높이 2/3정도로 하여 냉·난방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안정실 남녀 구분 파티션	두꺼운 재질로 남·여 안정실을 구분하고, 통풍과 채광을 위해 위쪽은 창문을 만들어서 필요시 열 수 있도록 한다.
4	안정실의 경계	파티션 벽의 빈 공간을 이용해 게시판을 설치한다.
5	안정실 출입문	파티션 색과 어울리게 설치하고, 윗부분의 모서리를 직사각형 보다는 둥글게 한다.
6	불박이장	진공청소기 및 청소도구, 신체검사 도구, 보관용 침구세트 등 기타 물품을 보관한다.
7	상담실	원탁과 편안한 개인용 의자를 비치한다. TV·VTR을 함께 비치하고 의자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화면 크기
8	상담실의 파티션	너무 높지 않게 하여 분리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에어컨	냉방 시 보건실 전체적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대각선으로 비치
10	관리실 책상	미니 스테이션으로 너무 높지 않도록 하며,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 “ㄴ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비치한다.
11	관리·처치실의 수납장	약품 및 건강기록부, 보건교육자료 등의 물품 보관을 위한 잠금 장치,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멸균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
12	냉장고	냉동장치가 가능한 냉장고로, 수납장 사이의 공간에 넣는다.
13	자외선 켄,소독기, 의료기구 멸균기	수납장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하여 단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4	드레싱 카	바퀴가 있으므로 필요시 진찰대로 이동시켜 치료 가능토록 한다.
15	처치용 의자	치료자와 환자용 의자를 두어 앉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료한다.
16	핸드 드라이어 또는 핸드 타월	수건은 감염병 유행시 위험하므로 핸드 드라이어 또는 핸드 타월 설치
17	세면대 및 세족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 중 더러운 손이나 발을 바로 씻을 수 있도록 출입문 가까이 설치한다.
18	창문	버티컬 또는 커튼을 설치한다.

▶ 학교 보건실 내부환경

구 분	구조 및 설비 내역	비 고
천장 및 벽 면	쾌적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파스텔톤의 도색 또는 도배지 사용	도색 후 코팅으로 처리
바 닥	모노륨, 우드륨, 데코타일 깔기 (위생적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 선정)	보건실내 전용 실내화 사용
침대보, 이불 등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트, 이불, 베개 등 비치	어두운 색 지양
창 문	시대적 감각에 맞는 파스텔톤의 블라인드나 버티칼 사용 및 방충망 설치	복도측 창문에도 설치
각실의 구획설정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치 밝고 온화한 파스텔 톤의 파티션 설치 시화, 명화 등 그림액자 게시 남·여 공학의 경우 안정실 구분	칸막이 높이는 바닥에서 1.5미터 정도 유지 파란 나일론 가리개 사용 지양
보건·의료용품	자외선소독기 충분한 약품 및 수납장, 침대 보유 드레싱카 비치 신체검사 기구(비만도측정기, 좌고계, 아크릴 시력표), 온·습도계 비치 냉장고, 독극물 보관장 계절에 맞는 온화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위생복 착용	- 보건실 규모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적정량 구비 - 위생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구분
시설·설비	수도시설(손·발 구분 설치) 원탁 응접세트(상담용) 공문서, 약품 및 건강기록부 등 수납장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대기용 의자	종합보관장 설치
냉·난방 시설	공해가 없는 냉·난방 설비 구비	동·하절기 적정온도 유지
실내조명	보건실 위치에 적당한 조명 설치 - 어두운 곳은 할로겐 등 설치 안정실은 조도 조절장치 별도설치	
벽면 게시물	월별 학교보건사업추진내용, 응급처치 그림 자료, 보건활동 자료 (사진자료 등) 보건(봉사)반 운영 계획 월별, 증세별 보건실 이용자 현황 통계 신체검사 결과 통계 및 비교표	
건강소식 홍보판	계절별 건강관련자료, 보건시사자료 등 병리검사, 신체검사 등 이달의 보건행사 및 보건관련 소식 등	복도벽면 게시판 이용

▶ 게시물 안내

구 분	분야별	자료내용
보건실	보건소식코너	이달의 건강주의보 유행되는 질병(전염병 등)의 특성 및 예방요령을 중심으로 게시
	구강관리 (치아사랑)	충치의 원인, 치아관리법
	비만관리	비만원인, 운동 및 식이요법
	시력관리	눈의 구조, 운동 등 시력예방법
	흡연예방교육	흡연의 폐해, 질병 및 포스터 등을 게시
	모형 등	인체해부도, 스모키인형, 자궁모형, 파일, 비디오 등
보건교육실	성교육코너	성교육자료(게시자료, 파일자료), 성교육 모형
	약물오·남용	약물·흡연예방코너 등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illegible]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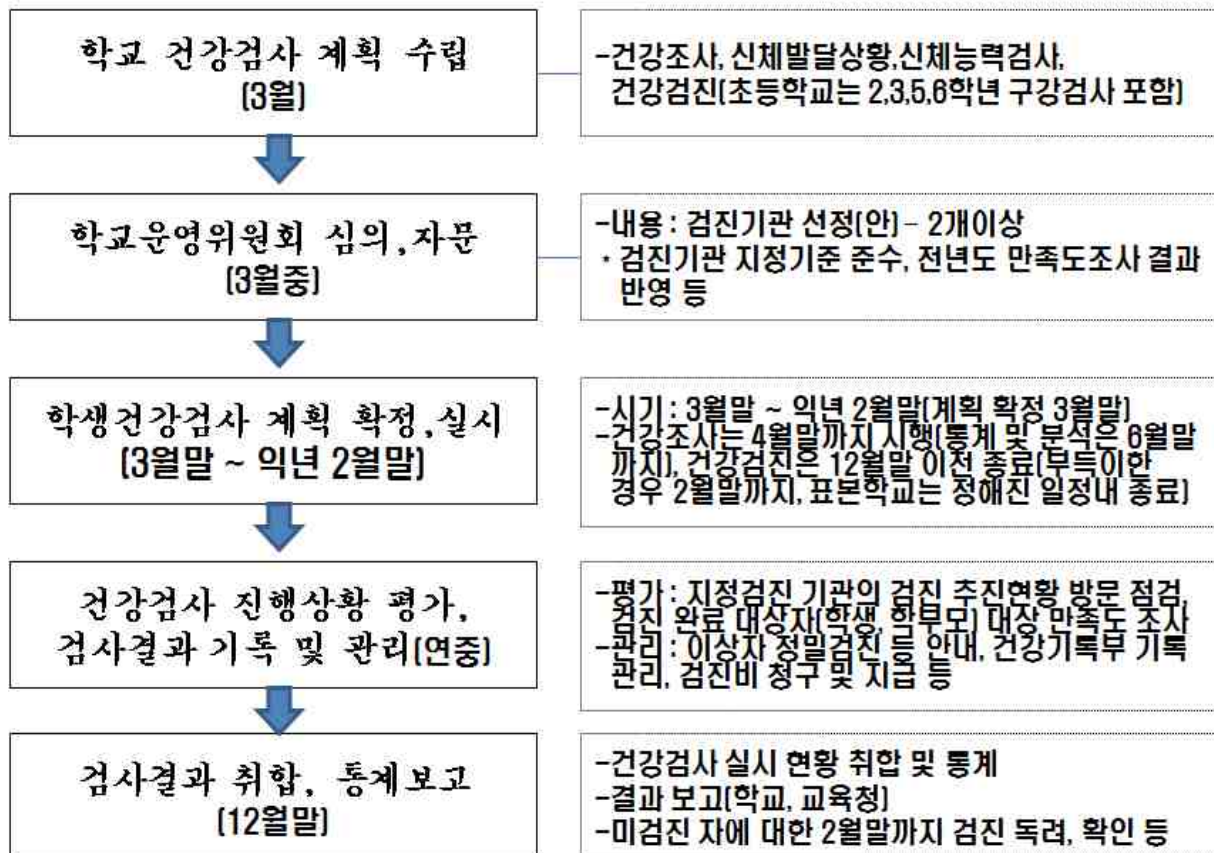
2018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1. 근 거

- 「학교보건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2.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흐름도)]



3. 학교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4. 건강검사 실시기준

가. 신체의 발달상황

- 1) 검사시기 : 연중
- 2) 검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포함) 전교생

☞ 유치원 건강검진은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사업’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시행

- 3) 검사종목 : 키(cm), 몸무게(kg), 비만도
- 4)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별표 1】 참조
- 5) 검 사 자 : 학교장(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검진기관에서 실시)
- 6) 결과처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
【별표 2】

나. 건강조사

- 1) 조사시기 : 4월 중
- 2)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전교생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 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검진기관 준비)의 작성으로 같음

3) **조사항목 및 내용**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제2항 **【별표 3】**

4) **조사자** : 학교장

5)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문진표**[초등학교 1,4학년→ **【별표 4】** , 중·고등학교 1학년→ **【별표 5】**]에 의거 실시

○ 초등학교 2,3,5,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 → **【별표 6】** , **중·고등학생** → **【별표 7】**]에 의거 실시

※ 유의사항 : 건강조사용 설문지는 학교 자체에서 인쇄하여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6) **조사결과 처리** : 상반기 중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 관리에 반영

다. 건강검진

1) **검진시기** : 연중(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완료)

2) **검진대상** : 초등학교 1, 4학년(다만, 구강검진은 전체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초1·4학년 및 중·고 1학년), 평생교육시설학교 고1 과정

3) **검진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실시하며,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함 **【별표 8】** 참조

4) **2017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및 산출기준** : **【별표 9】** , **【별표 9-1】** 참조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적용

5) **검진기관 선정**

가)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일반 및 구강검진**)

나) **검진기관 지정기준** : **【별표 10】** , **【별표 10-1, 10-2】** 참조

【건강검진 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검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메인화면“건강정보 건강in”→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주소(부산시, 구/군 선택) → 검색

다) 검진기관수 :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라)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사례1	사례 2	사례 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 과		1개	2개

※ 위 표상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 임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1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선정하지 않아도 됨

▶ 사례 2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 사례 3 :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 하여야 함.

마) 선정방법 : 반드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6) 건강검진 실시방법

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학교지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 전산 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당해 검진기관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여부와 해당학년의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비 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검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관련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진기관의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검진기관은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혈액 채혈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바) 구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고 1학년 :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

(2) 초등학교 2,3,5,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 학교에서 지정한 구강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다만, 출장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진 실시)

(3) 구강검진 실시방법

(가) 구강검진 문진표는 **【별표 11】** 참조

(나) 지정된 의과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시

(다)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진기관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금지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결과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인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구강검진기관인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와 계약을 하여 고용할 수 없음.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가) 검진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에 따른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

나) 검진결과 판정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별표 12】 참조

(2) 검진기관의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12-1】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다) 검진결과 기재방법

(1)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검진결과 기재

(가)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별표 13】'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나)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8) 건강검진결과 통보

가)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별표 14】'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별표 15】'를 각각 작성하여 통보한다.

나) 검진기관은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다) 이 경우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이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마)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별표 16】**’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하여야 한다.

사)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학교장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정밀검사를 요함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한다.

자)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한다.

라. **별도검사**

1) 소변검사

가) 시기 : 3월~9월(학교별 일정 : **【별표 19】**)

나) 방법 : 검사기관(**한국학교보건협회부산지부**)에서 채뇨통을 준비하여 학교에 배부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채뇨 → 검사기관에서 회수 및 검사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다만, 건강검진 대상 초1,4, 중·고1은 제외)

라) 검사항목 : **단백, 당, 잠혈**

마) 비용 : **89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바)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2) 결핵검사

가) 시기 : 3월~10월(학교별 일정 : 추후 통보)

나) 방법 : 검진기관인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

다) 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라) 비용 : **3,16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마)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3) 시력검사

가) 시기 : 3월~10월(학교일정에 따라 시행)

나) 방법 : 학교의 장이 연 1회 실시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단, 건강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은 제외)

5.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실시**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나.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부모 불편사항 또는 검진기관 이용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진기관에 개선조치 요청(공문요청)토록 하고, 자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조치하는 등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다.

- 다. 학교장이 검진기관에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평가 등과 관련하여 개선여부를 현장확인 하도록 한다.

6. 검진비용의 청구 및 심사 · 지급

가. 검진비용 청구

- 1)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 【별표 9】에 의한다.
-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3)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건강검진 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실시인원과 학교에 통보한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인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검진기관은 검사항목 중 비만학생 혈액검사와 고등학교 여학생 혈액소 검사와 결핵검사의 검사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5)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
- 6)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나.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 검진항목, 검진결과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2)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정산 또는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 정산기준 【별표 17】’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검진기관에 정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진비용 지급

- 1)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검진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보건기관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 학교 및 검진기관의 유의사항

가. 학 교

- 1)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최소화 노력
- 2) 학교장 지정 검진기관 선정 관련 점검 등 유의사항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인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검사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의료 인력의 자격 및 채용관계 증명 서류,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등 사전 점검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성, 안전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신속한 검진 실시와 관련한 제반 협조사항 점검
 - 검진 당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 실시
 - 방문 검진 가능일 및 시간 안내, 기타 협조사항 등
- 3)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괄처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 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안내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 4)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 직접 징구 [관련공문 : 교육재정과-2020, 2014.2.7. 입찰 및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시행계획 알림]
 - 계약관련 서류는 간소화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함
- ※ 계약서 간소화 예시자료 【별표 18】
- 5)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
- ※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 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사례 금지
- 6)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구강)검사결과통보서 외의 통계자료 등 기타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7) 건강검진 실시 안내
- 학교장은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비롯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안내)을 실시하되, 특히 종전과 달라진 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한다.
 -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안내 시 포함할 내용

-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
- 검진대상자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검진결과통보서 발급이 되지 않을 시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포함)
- 검진 당일 주의사항, 지참 서류, 지정 검진기관명 등

나. 검진기관

- 1) 문진표 **【별표 4, 5】** , 구강검진문진표 **【별표 11】**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 2)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3)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방학이나 토·공휴일에도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 4)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5)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6)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함.
-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kg/m^2)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각각 산출한다. 2. 표기방법 가.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를 성별, 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1)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이상 95미만 경우: "과체중" 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이상인 경우: "비만" 3) 성인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text{kg}/\text{m}^2$ 이상인 경우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 4)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미만인 경우: "저체중" 5) 1)부터 4)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나.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산출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표기한다. 1)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경도비만" 2)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중등도비만" 3)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50퍼센트 이상 무거운 경우: "고도비만"

※ 비고 : 1. 수치는 소수 첫 째 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 째 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 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비만도는 체질량지수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각각 산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붙임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1-3 키에 대한 표준체중 및 비만도(남자)
 1-4 키에 대한 표준체중 및 비만도(여자)

[별표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연령(년)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13.8 Kg / m ²	17.3 Kg / m ²	18.8 Kg / m ²
6.0	13.8 Kg / m ²	17.9 Kg / m ²	19.6 Kg / m ²
7.0	13.8 Kg / m ²	18.9 Kg / m ²	20.9 Kg / m ²
8.0	14.0 Kg / m ²	19.8 Kg / m ²	22.1 Kg / m ²
9.0	14.2 Kg / m ²	20.8 Kg / m ²	23.3 Kg / m ²
10.0	14.5 Kg / m ²	21.7 Kg / m ²	24.5 Kg / m ²
11.0	14.8 Kg / m ²	22.6 Kg / m ²	25.5 Kg / m ²
12.0	15.3 Kg / m ²	23.3 Kg / m ²	26.4 Kg / m ²
13.0	15.7 Kg / m ²	23.9 Kg / m ²	27.0 Kg / m ²
14.0	16.2 Kg / m ²	24.4 Kg / m ²	27.5 Kg / m ²
15.0	16.7 Kg / m ²	24.7 Kg / m ²	27.8 Kg / m ²
16.0	17.2 Kg / m ²	25.0 Kg / m ²	27.9 Kg / m ²
17.0	17.7 Kg / m ²	25.1 Kg / m ²	27.9 Kg / m ²
18.0	18.1 Kg / m ²	25.2 Kg / m ²	27.9 Kg / m ²

[별표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연령(년)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13.5 Kg / m ²	17.1 Kg / m ²	18.3 Kg / m ²
6.0	13.5 Kg / m ²	17.5 Kg / m ²	19.0 Kg / m ²
7.0	13.5 Kg / m ²	18.3 Kg / m ²	20.1 Kg / m ²
8.0	13.7 Kg / m ²	19.1 Kg / m ²	21.1 Kg / m ²
9.0	13.9 Kg / m ²	19.9 Kg / m ²	22.1 Kg / m ²
10.0	14.2 Kg / m ²	20.7 Kg / m ²	23.1 Kg / m ²
11.0	14.6 Kg / m ²	21.5 Kg / m ²	24.0 Kg / m ²
12.0	15.1 Kg / m ²	22.2 Kg / m ²	24.8 Kg / m ²
13.0	15.6 Kg / m ²	22.8 Kg / m ²	25.4 Kg / m ²
14.0	16.2 Kg / m ²	23.3 Kg / m ²	25.8 Kg / m ²
15.0	16.7 Kg / m ²	23.7 Kg / m ²	26.1 Kg / m ²
16.0	17.2 Kg / m ²	23.9 Kg / m ²	26.2 Kg / m ²
17.0	17.6 Kg / m ²	24.0 Kg / m ²	26.2 Kg / m ²
18.0	17.9 Kg / m ²	24.0 Kg / m ²	26.2 Kg / m ²

[별표 1-3]

키에 대한 표준체중 및 비만도

남				신장	여			
표준체중	경도	중등도	고도		표준체중	경도	중등도	고도
15.9	19.0	20.6	23.8	100 ~ 100.9	15.8	18.9	20.5	23.6
16.1	19.4	21.0	24.2	101 ~ 101.9	16.0	19.2	20.8	24.0
16.4	19.7	21.3	24.6	102 ~ 102.9	16.3	19.6	21.2	24.5
16.7	20.0	21.7	25.1	103 ~ 103.9	16.6	19.9	21.6	24.9
17.0	20.4	22.1	25.5	104 ~ 104.9	16.9	20.3	21.9	25.3
17.3	20.8	22.5	26.0	105 ~ 105.9	17.2	20.6	22.3	25.8
17.6	21.1	22.9	26.4	106 ~ 106.9	17.5	21.0	22.7	26.2
17.9	21.5	23.3	26.9	107 ~ 107.9	17.8	21.3	23.1	26.7
18.3	21.9	23.8	27.4	108 ~ 108.9	18.1	21.7	23.5	27.2
18.6	22.4	24.2	27.9	109 ~ 109.9	18.4	22.1	23.9	27.6
19.0	22.8	24.7	28.5	110 ~ 110.9	18.8	22.5	24.4	28.1
19.4	23.2	25.2	29.0	111 ~ 111.9	19.1	22.9	24.8	28.7
19.7	23.7	25.7	29.6	112 ~ 112.9	19.5	23.4	25.3	29.2
20.1	24.2	26.2	30.2	113 ~ 113.9	19.8	23.8	25.8	29.7
20.6	24.7	26.7	30.8	114 ~ 114.9	20.2	24.2	26.3	30.3
21.0	25.2	27.3	31.5	115 ~ 115.9	20.6	24.7	26.8	30.9
21.4	25.7	27.8	32.1	116 ~ 116.9	21.0	25.2	27.3	31.5
21.9	26.2	28.4	32.8	117 ~ 117.9	21.4	25.7	27.8	32.1
22.3	26.8	29.0	33.5	118 ~ 118.9	21.8	26.2	28.4	32.7
22.8	27.3	29.6	34.2	119 ~ 119.9	22.3	26.7	29.0	33.4
23.3	27.9	30.3	34.9	120 ~ 120.9	22.7	27.3	29.5	34.1
23.8	28.5	30.9	35.7	121 ~ 121.9	23.2	27.8	30.1	34.8
24.3	29.2	31.6	36.5	122 ~ 122.9	23.7	28.4	30.8	35.5
24.8	29.8	32.3	37.2	123 ~ 123.9	24.2	29.0	31.4	36.2
25.4	30.5	33.0	38.1	124 ~ 124.9	24.7	29.6	32.1	37.0
25.9	31.1	33.7	38.9	125 ~ 125.9	25.2	30.2	32.8	37.8
26.5	31.8	34.5	39.8	126 ~ 126.9	25.8	30.9	33.5	38.6
27.1	32.5	35.2	40.7	127 ~ 127.9	26.3	31.6	34.2	39.5
27.7	33.2	36.0	41.6	128 ~ 128.9	26.9	32.3	35.0	40.3
28.3	34.0	36.8	42.5	129 ~ 129.9	27.5	33.0	35.7	41.2
29.0	34.7	37.6	43.4	130 ~ 130.9	28.1	33.7	36.5	42.1
29.6	35.5	38.5	44.4	131 ~ 131.9	28.7	34.5	37.3	43.1
30.3	36.3	39.3	45.4	132 ~ 132.9	29.4	35.2	38.2	44.1
30.9	37.1	40.2	46.4	133 ~ 133.9	30.0	36.0	39.1	45.1
31.6	37.9	41.1	47.4	134 ~ 134.9	30.7	36.9	39.9	46.1
32.3	38.8	42.0	48.5	135 ~ 135.9	31.4	37.7	40.8	47.1
33.0	39.6	42.9	49.5	136 ~ 136.9	32.1	38.6	41.8	48.2
33.7	40.5	43.9	50.6	137 ~ 137.9	32.9	39.5	42.7	49.3
34.5	41.4	44.8	51.7	138 ~ 138.9	33.6	40.4	43.7	50.4
35.2	42.3	45.8	52.8	139 ~ 139.9	34.4	41.3	44.7	51.6
36.0	43.2	46.8	54.0	140 ~ 140.9	35.2	42.2	45.7	52.8
36.8	44.1	47.8	55.1	141 ~ 141.9	36.0	43.2	46.8	54.0
37.6	45.1	48.8	56.3	142 ~ 142.9	36.8	44.2	47.9	55.2
38.4	46.0	49.9	57.5	143 ~ 143.9	37.7	45.2	49.0	56.5
39.2	47.0	50.9	58.7	144 ~ 144.9	38.5	46.2	50.1	57.8
40.0	48.0	52.0	60.0	145 ~ 145.9	39.4	47.2	51.2	59.1

남				신장	여			
표준체중	경도	중등도	고도		표준체중	경도	중등도	고도
40.8	48.9	53.0	61.2	146 ~ 146.9	40.3	48.3	52.3	60.4
41.6	50.0	54.1	62.4	147 ~ 147.9	41.1	49.4	53.5	61.7
42.5	51.0	55.2	63.7	148 ~ 148.9	42.0	50.4	54.7	63.1
43.3	52.0	56.3	65.0	149 ~ 149.9	43.0	51.5	55.8	64.4
44.2	53.0	57.4	66.3	150 ~ 150.9	43.9	52.6	57.0	65.8
45.1	54.1	58.6	67.6	151 ~ 151.9	44.8	53.7	58.2	67.2
45.9	55.1	59.7	68.9	152 ~ 152.9	45.7	54.9	59.4	68.6
46.8	56.2	60.8	70.2	153 ~ 153.9	46.6	56.0	60.6	70.0
47.7	57.2	62.0	71.5	154 ~ 154.9	47.6	57.1	61.8	71.4
48.6	58.3	63.1	72.9	155 ~ 155.9	48.5	58.2	63.1	72.8
49.5	59.4	64.3	74.2	156 ~ 156.9	49.4	59.3	64.2	74.1
50.4	60.4	65.5	75.5	157 ~ 157.9	50.3	60.4	65.4	75.5
51.3	61.5	66.6	76.9	158 ~ 158.9	51.2	61.5	66.6	76.8
52.2	62.6	67.8	78.2	159 ~ 159.9	52.1	62.5	67.8	78.2
53.1	63.7	69.0	79.6	160 ~ 160.9	53.0	63.6	68.9	79.5
54.0	64.8	70.2	81.0	161 ~ 161.9	53.9	64.6	70.0	80.8
54.9	65.8	71.3	82.3	162 ~ 162.9	54.7	65.6	71.1	82.0
55.8	66.9	72.5	83.7	163 ~ 163.9	55.5	66.6	72.1	83.2
56.7	68.0	73.7	85.0	164 ~ 164.9	56.3	67.5	73.1	84.4
57.6	69.1	74.8	86.4	165 ~ 165.9	57.0	68.4	74.1	85.5
58.5	70.2	76.0	87.7	166 ~ 166.9	57.7	69.2	75.0	86.5
59.4	71.2	77.2	89.0	167 ~ 167.9	58.3	70.0	75.8	87.5
60.3	72.3	78.3	90.4	168 ~ 168.9	58.9	70.7	76.6	88.4
61.1	73.4	79.5	91.7	169 ~ 169.9	59.5	71.4	77.3	89.2
62.0	74.4	80.6	93.0	170 ~ 170.9	60.0	72.0	77.9	89.9
62.9	75.5	81.8	94.4	171 ~ 171.9	60.4	72.5	78.5	90.6
63.8	76.5	82.9	95.7	172 ~ 172.9	60.7	72.9	79.0	91.1
64.6	77.6	84.0	96.9	173 ~ 173.9	61.0	73.2	79.3	91.5
65.5	78.6	85.1	98.2	174 ~ 174.9	66.6	79.9	86.6	99.9
66.3	79.6	86.2	99.5	175 ~ 175.9	67.5	81.0	87.8	101.3
67.2	80.6	87.3	100.8	176 ~ 176.9	68.4	82.1	88.9	102.6
68.0	81.6	88.4	102.0	177 ~ 177.9	69.3	83.2	90.1	104.0
68.8	82.6	89.5	103.2	178 ~ 178.9	70.2	84.2	91.3	105.3
69.7	83.6	90.5	104.5	179 ~ 179.9	71.1	85.3	92.4	106.7
70.5	84.5	91.6	105.7	180 ~ 180.9	72.0	86.4	93.6	108.0
71.3	85.5	92.6	106.9	181 ~ 181.9	72.9	87.5	94.8	109.4
72.0	86.4	93.7	108.1	182 ~ 182.9	73.8	88.6	95.9	110.7
72.8	87.4	94.7	109.2	183 ~ 183.9	74.7	89.6	97.1	112.1
73.6	88.3	95.7	110.4	184 ~ 184.9	75.6	90.7	98.3	113.4
74.4	89.2	96.7	111.5	185 ~ 185.9	76.5	91.8	99.5	114.75

<한국소아발육 표준치, 대한 소아과학회, 2007>

이 표에 없는 경우는, 표준체중 산출공식 [표준체중=(키-100)x0.9]에 의함

[별표 2]

(앞면)

학 생 건 강 기 록 부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 등록 번호	~	혈액형	형 Rh()	보호자	

학 교	학년	반(이수과정/학과)	번호	담 임 성 명

2. 전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폴 리 오						
결 핵						
일 본 뇌 염						
수 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학교/학년	접종일자	대상 전염병	학교/학년	접종일자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뒷면)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 게(kg)													
비만도	체질량지수												
	상대체중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오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등)	분:초	공란								
	1,600m(중·고/남)	분:초	공 란								
	1,200m(중·고/여)	분:초	공 란								
스 텝 검 사		PEI	공란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 합 유 연 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회	공 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른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건강	검진일자		공 란			공 란			
검진	검진기관		공 란			공 란			
구강	검진일자								
검진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사일자													
검 사 명													
검사기관													

[별표 3]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제4조의2제2항 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 ‘별표4~별표7’ 설문지로 조사

[별표 4] 문진표(초)

이 설문조사는 건강경사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문진표 (초등학교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1. 학생의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당질환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3.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타나는 증상				건강 생활				건강 생활 행동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간기에 잘 걸린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에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매일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는다.							
당뇨병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암				채취기와 함께 많은 옷들이 흐를 때가 있다.				폴리염로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간질환				습할 때 소리가 난다.				행버거·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정신질환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파가울 때가 자주 있다.				개인 위생							
위염, 소화성궤양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소화기계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비만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인라인스케이팅·롤리슬레이드·스케이팅보드 또는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착용한다.							
작열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TV·인터넷							
전신				속이 답답하다.				텔러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숙중증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호흡기계				침사를 자주 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폐도식비대				진에 체이었던 공부나 놀이에 흥미가 없다.				가정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분				화가 나면 단독한 행동을 한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귀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학교 생활							
전력장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그 밖의 귀 질환(이명 등)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아토피 피부염				목에 양이 잘 든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피부				머리가 자주 아프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그 밖의 피부질환				핏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모든 것이 귀찮고 화망이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진다.							
선전성심장질환(여러서부터)				귀에서 소리가 난다.				공부시간에 성생님께 자주 혼난다.							
민형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귀하의 자녀가 만 5세 이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뛰 어다녀거나 말을 많이 하나까? (1학년만)							
적주독만증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귀하의 자녀는 주의력이 없고 주의가 산만하니까? (1학년만)							
디스크나 요통				무릎이 쑤시거나 아프다.				혹 고집이나 괴로운 일로 상상을 받고 있다.							
사지 운동의 장애				특별히				(학교 제량만)							
외상이나 사고				의사진생님께 하고 싶은 말											
소아정신과 질환															
소아당뇨병															
결핵															
정련이나 발작(경기)															
언어장애나 발달장애															
간염(여러서부터)															
수술한 경험(여러서부터)															
임원한 경험(여러서부터)															
그 밖의 질환(중독, 백일해, 풍역, 수두 등 포함)															

[별표 5] 문진표(중·고)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1. 학생의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당질환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의학적 병력	있음	누가	질환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질환			
결핵			
정신질환			

2.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수화 기계	위염 또는 소화성질환	질병의 과거력		있음	질환명
		위염	소화성질환		
호흡 기계	천식				
	축농증				
	알레르기성비염 또는 만성비염				
눈·귀	평도선비대				
	안질환·사시 등				
	중이염				
	청력장애				
피부	그 밖의 피부 질환(이명 등)				
	아토피 피부병				
	그 밖의 피부질환				
순환 기계	빈혈				
	고혈압				
	적주축관증				
근골 격계	디스크나 요통				
	사지운동의 장애				
	외상이나 사고				
	소아정신과 질환				
	결핵				
	약물알레르기				
	당뇨병				
그 밖의 질환 등	두통(편두통 제외)				
	정련이나 발작(경기)				
	인어장예(알다름 포함)				
	간염(여러사부터)				
	수술한 경험(여러사부터)				
	임원한 경험(여러사부터)				
	그 밖의 질환(중독·자살기도 등)				

문 진 표 (중·고등학생용)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 오
진식 상태	잡기에 잘 걸린다.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체격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호흡기	숨쉬기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뻑뻑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몸에서 땀이 많이 났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혈액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소화기	속이 답답하거나 가슴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배가 뻥뻥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기분이 차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정신 건강	학업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콧물이 나온다.		
그 밖의 증상	귀에서 메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뭉치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불이 심하다.		
특별히 의사상생년개 하고 싶은 말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학 년	반	학 교 번
	학년 / 반 / 번호				
	성 명				
상황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건강 생활 행동					
식 생 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단음식이나 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개인의 생 활	정당음료·햄버거·피자 또는 패스트를 거의 매일 먹는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인 터 넷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잘 경도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한다.				
	공부나 운동을 잘安排하여 하고 나쁜 개운하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인라인스케이팅,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팅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가정 및 학교 생 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등이나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성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대마초나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성문체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 육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 고민이나 괴로움 외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 재량란)					

[별표 6] 건강조사 설문지(초)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명		집중일자	집중기관
1. 최근 1년간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주세요.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주세요		나와의 관계	
3.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세요.			
질병의 과거력		있음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변비		
호흡기계	장염		
	천식		
눈·귀	축농증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피부	편도선비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순환기계	눈병, 사시, 소아백내장 등		
	중이염		
근골격계	청력장애		
	그 밖의 귀 질환(이명 등)		
그 밖의 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그 밖의 피부질환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빈혈		
	척추측만증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디스크나 요통		
	사지 운동의 장애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외상이나 사고		
	소아정신과 질환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아물 알레르기		
	소아당뇨병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결핵		
	결핵이나 발작(경기)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인어장에 나 발달장애		
	간염		
신경성심장질환(아려서부터)	수술·입원 경험(아려서부터)		
	그 밖의 질환(중독, 백일해, 홍역, 수두 등 포함)		

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변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떠먹는 요거트를 먹는다.		
	평소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만 주로 먹고, 편식이 심하다.		
개인 위생 관리	플란·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행복기·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식생활 습관	주 3회 이상 밥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제주를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 생활 & 가정 생활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 준다.		
TV, 인터넷	텔레비전은 매일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안전 의식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헐박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몸품(책, 옷 등)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1년)		

인 사 상	학 교 명	학 교		
	학년/ 반/ 번호	학년	반	
	성 명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음주 흡연 약물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잘 안오는 약이나 잘 오는 약, 살 때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사회성 / 정신 건강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감기에 잘 걸린다.			
기타 건강 문제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된다.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를 자주 흘린다.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어릴적 부터 앓고 있는 난치성 질환이 있다.(천식, 아토피, 심장질환, 백일해, 임, 당뇨, 기타)			
기타	담임선생님과 교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보건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교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학교 재량)				

건강조사 설문지

(중 · 고등학생용)

다음을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안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는다.

평소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만 주로 먹고, 편식이 없다.

첨가물로 · 햄버거 · 피자 또는 패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개인 위생 관리

제중 조질을 위해 끓거나 약을 먹는다.

식사 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빨을 닦는다.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체중을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학교 생활 & 가정 생활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함을 자주 느낀다.

고민이 있거나 피로를 때 의논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지난 1년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텔레비전은 매일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인간의 의식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 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이나 폭력을 당 한 적이 있다.(지난 1년 동안)

학교 내에서 옷이나 몸품(책, 옷, 돈) 등을 빼앗 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인 사 상

학 교 명

학 년 / 반 / 번호

성 명

학 교

학 년

반

번호

인 사 상

학 교 명

학 년 / 반 / 번호

성 명

학 교

학 년

반

번호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잠 안 오는 약이나 잠 오는 약, 살 때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홍기식에 본드 · 부탄가스 · 기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육체적 · 정신적 ·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감기에 잘 걸린다.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된다.

심사를 자주 한다.

코피를 자주 흘린다.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부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어릴적 부엌 있고 있는 난직성 질환이 있다.
(천식, 아토피, 심장질환, 백혈병, 암, 당뇨, 기타)

담임선생님과 교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보건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교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기타

(학교 재량판)

[별표 8]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2. 눈	2-1. 시력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2-2. 색각이상유무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2-3.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3-1.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3-2.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4. 콧 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 병		편도선비대·경부림프절종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7-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9. 병리 검사 등	9-1. 소 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가. 비만학생: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나. 여고학생: 혈색소
	9-3. 혈액형	ABO 및 RH식
	9-4.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5. 간 염	B형간염 항원
	9-6. 혈 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학교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 2-2 "색각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 9-2 "혈액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도가 "경도비만"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 대하여는 혈색소 검사를 따로 실시한다.
 - 9-3 "혈액형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 9-4 "흉부X선 검사"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 9-5 "간염검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따른다.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붙임 : 8-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별표 8-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근·골격 및 척추		가) 근·골격계 - 가슴에서는 흉골과 늑골의 연결부위 종창, 사지의 외형, 근육의 긴장도, 다리길이, 관절의 운동 범위, 대칭성 검사 나) 척추; 척추측만증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귀	2-1.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2-2.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3. 콧 병		-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4. 눈	4-1. 시력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4-2. 색각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4-3. 안질환	• 결막염,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5. 목병	• 편도선비대, 임파절 종대, 갑상선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7-1. 치아 상태	•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7-2. 구강 상태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8. 기관능력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상세히 읽고 해당 문항별 문진과 진찰을 실시한 후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1) 전신 상태 - 신체 계측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학생의 태도와 행동, 창백하거나 무기력한지 전신적인 영양 상태, 아파하는 기색 등을 관찰 (2) 호흡기 - 흉곽 좌우가 대칭인지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아닌지 보고 천명이나 수포음이 들리는지 청진함. 호흡음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타진으로 탁음 유무 관찰
	(3) 순환기 -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인지, 심음이 정상인지, 심잡음 유무 및 특징 등 청진 - 양측 목의 경동맥, 손목의 요골동맥에서 맥박 확인 (4) 비뇨기 -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다음 사항을 검진할 수 있다.(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장한다.) -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 (5) 소화기 (복부 진찰 포함) - 시진을 통해 피부 백선의 착색 유무, 음모의 확장 부위, 배의 윤곽을 파악하고 압통이 있는지, 기관(간, 비장)이 만져지는지, 그 외에 배에서 다른 종괴가 만져지는지 확인 (6) 신경계 - 사지의 근력을 관찰함 - 물건을 잡으려 할 때나 finger-to nose test 할 때 진전이 있는지, 안구진탕 여부, 심부 건반사, 대운동과 소운동의 조화, 혀/얼굴/목/상지의 경련이나 비틀림이 있는지 관찰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9. 병리 검사 등	9-1.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9-2.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 여고학생 : 혈액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9-3. 혈액형	• ABO 및 RH식
	9-4.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5. 간염	• B형간염 항원
	9-6. 혈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 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9]

2018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산출기초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근·골격 및 척추 - 눈(시력, 색각,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 - 피부병 - 기관능력 - 키,몸무게,비만도,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7,980	7,980	7,980	7,980	7,980	7,980	7,980	7,980	7,980
구강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060	7,060	7,060	7,060	7,060	7,060	7,060	7,060	7,060
병 리 검 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890
	혈액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 여학생(고1) : 혈액소		-	-	6,430	-	6,430	-	6,430	6,430 + 990	990
	혈액형(ABO, Rh)	의원	4,180								
		병원	3,770								
		보건기관	4,070								
	결핵 (직찰)	(14"×14")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660	7,660	7,660	7,660	7,660	7,660
		(14"×17")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970	7,970	7,970	7,970	7,970	7,970
		CR or DR				6,320	6,320	6,320	6,320	6,320	6,320
		Full PACS				7,150	7,150	7,150	7,150	7,150	7,150
	간염(B형간염 항원)		-	-	-	2,680	2,680				
계		20,110 (의원)	15,930	22,360	(14"×14") 26,270	32,700	23,590	30,020	24,580	31,010	
		(14"×17") 26,580			33,010	23,900	30,330	24,890	31,320		
		CR or DR 24,930			31,360	22,250	28,680	23,240	29,670		
		Full PACS 25,760			32,190	23,080	29,510	24,070	30,500		

※ 참고

- ①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준용
- ② 혈액형 검사 비용(초 1년)은 검진기관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 중·고등학교 1학년 결핵 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함
- ③ 구강검진기관으로만 지정된 기관(치과의원 등)의 구강검진비도 동 기준 단가 적용

[별표9-1]

2018 학생 건강검진 세부내역 및 단가 산출기준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18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구분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검사비용 (원)	검사여부			
				초	초	중1	고1
				1년	4년		
①건강검진 상당료 및 행정비용 (공통)	1-1. 키(cm)	체격검사 요령에 의한	7,980	○	○	○	○
	1-2. 몸무게(kg)	체격검사 요령에 의한		○	○	○	○
	1-3. 비만도 측정	체질량지수(BMI),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		○	○	○	○
	1-4.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	○	○	○
	1-5. 시력 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	○
	1-6. 색각이상유무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	○	○	×
	1-7.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	○	○
	1-8.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	○
	1-9.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	○	○	○
	1-10. 콧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	○
	1-11. 목병	편도선비대, 임파절증대, 갑상선비대 등 검사		○	○	○	○
	1-12.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염, 전염성 피부염 등 검사		○	○	○	○
	1-13. 혈압 측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	○
	1-14.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 포함)·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	○	○	○
	1-15.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	○	○	○
② 구강	2-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7,060	○	○	○	○
	2-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	○	○	○
③ 병리검사 등	3-1. 소변검사	시험지법(요단백, 잠혈, 요당)	890	○	○	○	○
	3-2. 혈액검사	3-2-1. 혈당(식전)	1,300(비만)	×	○	○	○
		3-2-2. 총콜레스테롤	1,590(비만)	×	○	○	○
		3-2-3. AST(SGOT)	1,790(비만)	×	○	○	○
		3-2-4. ALT(SGPT)	1,750(비만)	×	○	○	○
		3-2-5. 혈색소	990(여고생)	×	×	×	○
	3-3. 혈액형검사	ABO 및 RH식	의 원	4,180	○	×	×
			병 원	3,770			
			보건기관	4,070			
	3-4. 결핵검사	흉부 X-선 직촬(14"X1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7,660	×	×	○	○
		흉부 X-선 직촬(14"X17")-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7,970	×	×	○	○
		흉부 X-선 직촬(CR or DR)	6,320	×	×	○	○
		흉부 X-선 직촬(Full PACS)	7,150	×	×	○	○
	3-5. 간염검사	B형간염 항원	2,680	×	×	○	×
계	초1(공통) → 18종 19,700원(병원), 20,000원(보건기관), 20,110원(의원) 초4 → 일반학생 18종 15,930원, 비만학생 22종 22,360원 중1 → 일반학생 20종 24,930원~26,580, 비만학생 24종 31,360원~ 33,010원 고1 → 남(일반) 18종 22,250원~ 23,900원, 남(비만) 22종 28,680원~ 30,330원 여(일반) 19종 23,240원~ 24,890원, 여(비만) 23종 29,670원 ~ 31,320원						

※ 참고

- ①소변검사 : 시험지법 검사비용은 ‘요단백’ 1종에 대한 검사비이나, ‘잠혈’ 과 ‘요당’검사 항목 추가
- ②결핵검사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③초등학교 1학년 혈액형검사 비용은 검진기관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④중1, 고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별표 10]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현미경 사. 혈액학검사기기 아. 혈액화학분석기 자.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 비고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0-1]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별표 10-2]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의사 :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및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 :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별표 11]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 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u>최근 1년 동안</u>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쭈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u>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u> 쓰십시오.							

[별표 1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별표 12-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가.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 및 척추만곡 이상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청력이상 및 귓병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병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색각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병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병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우식증은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기관이상	기관능력		정상		검진결과 기관능력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고혈압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1 ~ 199
			정밀검사 요함		200 이상 또는 정상 참고치 95백분위수 이상
간장질환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신장질환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파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파 신장 질환 증상 동반
빈혈증 질환	혈색소 - 여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나.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 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다.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3rd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97th
6세(초1)	108.0	109.1	110.7	113.5	116.6	119.8	122.7	124.4	125.6
7세(초2)	114.4	115.5	117.3	120.3	123.7	127.3	130.6	132.6	133.9
8세(초3)	118.9	120.1	122.1	125.3	129.1	132.9	136.5	138.7	140.1
9세(초4)	123.2	124.6	126.7	130.2	134.2	138.2	141.9	144.1	145.5
10세(초5)	127.7	129.2	131.4	135.2	139.4	143.7	147.7	150.1	151.6
11세(초6)	132.6	134.1	136.5	140.6	145.3	150.1	154.6	157.3	159.2
12세(중1)	137.8	139.5	142.2	146.7	151.8	157.1	161.9	164.9	166.8
13세(중2)	143.9	145.9	148.9	153.8	159.0	164.1	168.5	171.1	172.8
14세(중3)	150.3	152.6	155.8	160.6	165.5	169.9	173.5	175.6	176.9
15세(고1)	156.4	158.4	161.1	165.4	169.7	173.6	176.8	178.6	179.7
16세(고2)	160.7	162.2	164.4	168.0	171.8	175.5	178.7	180.6	181.8
17세(고3)	162.5	163.8	165.8	169.1	172.8	176.5	179.9	181.9	183.3

연령	백분위수(여아)								
	3rd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97th
6세(초1)	107.1	108.1	109.7	112.4	115.5	118.6	121.4	123.1	124.2
7세(초2)	113.2	114.3	116.0	119.0	122.4	125.9	129.2	131.2	132.5
8세(초3)	117.7	118.9	120.7	124.0	127.8	131.7	135.4	137.7	139.3
9세(초4)	122.3	123.6	125.7	129.3	133.5	137.8	141.9	144.5	146.1
10세(초5)	127.5	129.0	131.4	135.3	139.9	144.6	149.0	151.6	153.4
11세(초6)	133.5	135.1	137.7	142.0	146.7	151.4	155.6	158.1	159.7
12세(중1)	139.7	141.4	144.1	148.3	152.7	156.9	160.5	162.5	163.9
13세(중2)	145.0	146.6	148.9	152.7	156.6	160.3	163.5	165.3	166.5
14세(중3)	148.4	149.7	151.7	155.0	158.5	162.0	165.1	167.0	168.1
15세(고1)	149.9	151.1	152.9	156.0	159.4	162.9	166.1	168.0	169.2
16세(고2)	150.5	151.7	153.5	156.5	160.0	163.5	166.7	168.6	169.9
17세(고3)	151.0	152.2	154.0	157.0	160.4	163.9	167.1	169.1	170.4

참고자료 :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 도표.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 신체 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 2007

라.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13]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 연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상대체중 및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계 질환 및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근·골격계 질환(요통, 어깨결림 등),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색각	공인색각표에 의거 검사하여 '정상' 또는 '이상'으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부비동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경부림프절종대', '갑상선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기관능력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9.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10.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1. 혈액형검사		A형, B형, O형, AB형 및 RH(+), RH(-)를 함께 기재
12.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3. 간염검사		B형간염 항원검사(HBsAg)에 대한 결과치를 '양성(+)' 또는 '음성(-)'으로 기재
14.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5.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6.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7.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진 기준 가이드라인 연구. 대한소아과학회, 2008

[별표 14]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반/번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소 변 검 사	요 단 백				
	몸 무 게				kg			요 잠 혈				
	비만도	체질량지수						혈 액 검 사	혈당(식전)		mg/dL	
		상대체중							총콜레스테롤		mg/dL	
근·골격 및 척추						AST			U/L			
눈	시력	나 안	좌 : 우 :			ALT			U/L			
		교 정	좌 : 우 :			혈 색 소			g/dL			
	색각이상 유무						혈액형 검사					
	안 질 환						흉부방사선 검사					
귀	청 력		좌 : 우 :			간염검사						
	귓 병					혈 압	수 축 기		mmHg			
콧 병							이 완 기		mmHg			
목 병						기 타						
피 부 병												
기 관 능 력	호 흡 기											
	순 환 기											
	비 뇨 기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소 화 기						생활습관					
	신 경 계						외상 및 후유증					
	기 타						일반상태					
종합소견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 진 일					
	의 사 명		(인)				검진기관명					

[별표 15]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중·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고등학교 추가항목					
우식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①	없음	②	있음	치은출혈/ 비대()
우식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석형성() 치주낭형성() 그 밖의 증상()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악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요교정	③	교정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 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 진 일				
	의 사 명		(인)				검진기관명				

(뒷면)

[illegible]

1.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위 표에 기재한다.

[별표 16]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검진기관명 :

[illegible]

[별표 17]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검사비용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입력 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남학생에게 혈색소 검사를 한 경우 - 초등학교 1학년에게 비만(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 - 비만이 아닌 학생에게 혈액검사를 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라. 지급보류	○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견·조치사항 및 판정(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	“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 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보류 후 시정완료 시 지급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 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이 서식은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 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준수한다.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별표 19]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3	12	월	사동, 사남		부산일과학교, 대광발명과학고, 동아공고,
3	13	화	보림, 신촌		부산자동차고, 부산국제금융고, 부경보건고
3	14	수	감천, 서천	감천중	부일외국어고, 부일디자인고
3	15	목	송도, 천마, (혜송학교)	송도중	부산관광고,
3	16	금	구덕, 대신	대신중, 부산여중	경성전자정보고
3	19	월	초량	선화여중, 덕원중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디지털고, 부산국제영화고
3	20	화	남항	부산체육중	부산보건고, 부산영상예술고, 부산체육고, 부산해사고
3	21	수	가락, 덕도	가락중	부산산업과학고, 부산조리고,
3	22	목	동주, 주례, 주원	동주중, 주례여중	
3	23	금	주학, 주양, 주감	주감중	주례여고
3	26	월	가평, 가산, 가남	주례중, 가야여중	
3	27	화	가야, 선암, 부산진	개성중	가야고
3	28	수	개금, 개림, 개화	개림중	경원고
3	29	목	개포, 개원	부산국제중	부산국제고, 한국과학영재고, 개금고
3	30	금	당평, 동원	개금여중, 광무여중	개성고
4	02	월	당감, 동평, 동양	동양중, 서면중	
4	03	화	부암, 부전	동평중, 동평여중	부산미용고
4	04	수	성지, 연지, 연학	부산진중, 초연중	
4	05	목	초읍, 거제	초읍중	부산진고, 부산정보고
4	06	금	양정, 양성		양정고, 부산진여고, 세정상업고
4	09	월	전포	거성중, 동의중	계성여상, 동의공고
4	10	화	성전	항도중, 부산진여중	부산진여상, 성모여고
4	11	수	양동, 동성	양동여중	동성고, 경남공고
4	12	목	성북	부산동중, 덕명여중	부산동고, 부산마케팅고
4	13	금	성서, 성동	성동중, 문현여중	한얼고
4	16	월	문현, (아시아공동체학교)		문현여고, 배정고, 부산경영고
4	17	화	신연, 성천	대연중	성지고, 대진전자통신고
4	18	수	우암, 동천, 동향	동향중, 감만중	
4	19	목	석포, 용당	석포여중	부산공고, 부산향만물류고
4	20	금	백운, 용호, 용산	용문중, 용호중	
4	23	월	운산, 오륙도	오륙도중	예문여고, 한국조형예술고
4	24	화	분포, 용문	분포중, 대천중	분포고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4	25	수	대천, 대연		대연고, 동천고, 부산세무고
4	26	목	연포, (해성학교, 해남학교, 부산구화학교)	해연중	중앙고
4	27	금	용소, 대남, 광남	남천중	부산동여고
4	30	월	남천, 광안, 호암	한바다중, 수영중, 동아중	
5	01	화	민락, 민안, 수영	동수영중, 망미중	
5	02	수	수미, 배산, (배화학교)	광안중	남일고, 덕문여고
5	03	목	망미, 센텀, 강동	센텀중	센텀고
5	04	금		해운대중	해운대고, 해운대관광고, 부산여상
5	08	화	해강, 해원	해강중	해강고, 부산기계공고
5	09	수	해림, 해운대		문화여고, 부산국제외고, 해운대공고
5	10	목	해동, 좌동, 송정	해운대여중	해운대여고
5	11	금	해송, 동백, 신곡	동백중, 신곡중	
5	14	월	신도, 양운	신도중, 양운중	신도고, 양운고
5	16	수	부흥, 상당	부흥중, 상당중	부흥고
5	17	목	좌산, 송수, 신재, 재송	재송여중	
5	18	금	반산, 반여, 위봉	재송중, 반여중	
5	21	월	인지, 무정, 반석	인지중	반여고
5	23	수	장산, 반안, 삼어	장산중, 반안중	부산골프고
5	24	목	반송, 운송	반송중, 반송여중	성심보건고
5	25	금	송운, 운봉, 신진, 철마	운송중	
5	28	월	기장, 대청	기장중, 대청중	기장고
5	29	화	일광, 교리, 죽성, 용암, 내리		
5	30	수	월내, 칠암, 좌천, 장안, (성우학교)	장안중	장안고, 장안제일고
5	31	목	월평, 모전, 정원, (해마루학교)	모전중	
6	01	금	신정, 가동, 달산	신정중	신정고
6	04	월	정관, 방곡	정관중, 중앙중	정관고
6	05	화	금사, 서곡	금사중	부산경호고, 금정전자공고, 예원여고
6	07	목	서동, 서명	동현중	내성고, 금정여고
6	08	금	명서, 교동	동해중	용인고, 대명여고
6	11	월	명장, 동상, (부산맹학교)	동신중, 학산여중	학산여고
6	12	화	명동, 안락, 총렬	총렬중	금정고, 총렬고
6	14	목	안남, 해화	안락중, 남일중, 해화여중	해화여고
6	15	금	안민, 안진, 토현	토현중	부산외국어고
6	18	월	연일, 연천, 과정, (동암학교)	연천중, 연일중	
6	19	화	연미, 동명, 연산	연제중	연제고
6	20	수	연동, 연제, 연서, 연신	연산중	
6	21	목	거학, 여고, 교대부속	여명중, 이사벨중	지구촌고, 이사벨고
6	22	금	남문, 창신	사직중, 거제여중	동인고

[illegible]

2 학기 일정표					
9	03	월	용수, 명진	용수중, 명진중	화명고
9	04	화	화명, 화잠, 대천리	대천리중	금명여고
9	05	수	금명, 신금	금명중, 금곡중	금곡고
9	06	목	덕천, 금창, 금곡, 와석	화신중	
9	07	금	구남, 구포	구남중, 구포중	백양고
9	10	월	신천, 포천	가람중	성도고, 삼정고
9	11	화	모동, 모산, 모덕	모동중	대덕여고
9	12	수	삼덕, 모라, (솔빛학교)	삼락중, 모라중	
9	13	목	덕포, 덕상, 창진	신라중, 덕포여중	
9	14	금	사상, 감전, 패법, 서감		사상고
9	17	월	학장, 학진, 구학	학장중, 엄궁중	구덕고
9	18	화	엄궁, 동궁, 을숙도	건국중	건국고, 부산여고
9	19	수	낙동, 하단, 신남, 하남	하단중, 하남중	
9	20	목	사하, 승학, 괴정	사하중, 당리중, 동주여중	
9	21	금	당리, 신평		동아고, 해동고, 성일여고
9	27	목	옥천, 구평	삼성중, 장평중	삼성여고
9	28	금	장림, 효림	영남중, 대동중, 장림여중	대동고
10	01	월	다송, 다선, 다대	두송중, 다송중, 다대중	
10	02	화	중현, 응봉, 물운대	다선중	다대고
10	04	목	감정, 아미, 남부민	초장중, 경남중	
10	05	금	토성, 부민, 화랑		경남고, 부경고
10	08	월	동신	대신여중, 중앙여중	해광고, 부산서여고
10	10	수	광일, 보수, 남성		남성여고, 동주여고
10	11	목	봉래, 동일중앙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부산고
10	12	금	수정, 수성, 좌성	부산동여중	경남여고
10	15	월	범일, 성남	금성중	금성고, 데레사여고
10	16	화	영도, 대교, 대평	영선중, 부산남중, 남도여중	
10	17	수	신선, 절영, 봉삼	신선중	부산남고, 영도여고
10	18	목	중리, 동삼, 태종대	동삼중, 영도중, 태종대중	
10	19	금	봉학, 청학, 청동, 상리	해동중	광명고
10	22	월	명지, 오션, 신명	명지중, 경일중	경일고
10	23	화	명호, 남명, (한솔학교)	명호중	명호고
10	24	수	대저, 대사, 녹산, 신호, 송정	지사중, 신호중	
10	25	목	배영, 덕두, 대상, (혜원학교)	대저중, 낙동중	대저고, 강서고
10	26	금	천가, 녹명, 삼광	덕문중, 녹산중	덕문고
			304(14) 개교	174 개교	152 개교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서 부 교 육 청)

1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3	12	월	사동, 사남		
3	13	화	보림, 신촌		
3	14	수	감천, 서천	감천중	
3	15	목	송도, 천마, (혜송학교)	송도중	
3	16	금	구덕, 대신	대신중, 부산여중	
3	19	월		덕원중	
3	20	화	남항	부산체육중	
2 학 기					
9	18	화	을숙도	건국중	
9	19	수	낙동, 하단, 신남, 하남	하단중, 하남중	
9	20	목	사하, 승학, 괴정	사하중, 당리중, 동주여중	
9	21	금	당리, 신평		
9	27	목	옥천, 구평	삼성중, 장평중	
9	28	금	장림, 효림	영남중, 대동중, 장림여중	
10	01	월	다대, 다선, 다송	다대중, 다송중, 두송중	
10	02	화	중현, 응봉, 물운대	다선중	
10	04	목	감정, 아미, 남부민	초장중, 경남중	
10	05	금	토성, 부민, 화랑		
10	08	월	동신	대신여중, 중앙여중	
10	10	수	남성, 보수, 광일		
10	11	목	봉래		
10	16	화	영도, 대교, 대평	영선중, 부산남중, 남도여중	
10	17	수	신선, 절영, 봉삼	신선중	
10	18	목	중리, 동삼, 태종대	영도중, 동삼중, 태종대중	
10	19	금	봉학, 청학, 청동, 상리	해동중	
계			55(1) 개교	33 개교	

(특수학교) 임.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남 부 교 육 청)

1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3	19	월	초량	선화여중	
3	22	목	주례, 주원		
3	26	월	가평, 가산, 가남	가야여중	
3	27	화	가야, 선암, 부산진	개성중	
3	28	수	개금, 개림, 개화	개림중	
3	29	목	개원, 개포	부산국제중	
3	30	금	당평, 동원	개금여중, 광무여중	
4	02	월	당감, 동평, 동양	동양중, 서면중	
4	03	화	부암, 부전	동평중, 동평여중	
4	04	수	성지, 연지, 연학	초연중, 부산진중	
4	05	목	초읍	초읍중	
4	06	금	양정, 양성		
4	09	월	전포	동의중	
4	10	화	성전	항도중, 부산진여중	
4	11	수	양동, 동성	양동여중	
4	12	목	성북	부산동중, 덕명여중	
4	13	금	성서, 성동	성동중, 문현여중	
4	16	월	문현, (아시아공동체학교)		
4	17	화	신연, 성천	대연중	
4	18	수	우암, 동항, 동천	동항중, 감만중	
4	19	목	석포, 용당	석포여중	
4	20	금	백운, 용호, 용산	용문중, 용호중	
4	23	월	운산, 오륙도	오륙도중	
4	24	화	분포, 용문	분포중, 대천중	
4	25	수	대연, 대천		
4	26	목	연포, (혜성학교, 해남학교, 부산구화학교)	해연중	
4	27	금	용소, 대남	남천중	
2 학 기					
10	11	목	동일중앙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10	12	금	수정, 수성, 좌성	부산동여중	
10	15	월	범일, 성남	금성중	
계			60(4) 개교	38 개교	

(특수학교) 임.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북 부 교 육 청)

1 학 기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3	21	수	가락, 덕도	가락중	
3	22	목	동주	동주중, 주례여중	
3	23	금	주양, 주감, 주학	주감중	
3	26	월		주례중	
7	10	화	신덕, 백양	신덕중, 백양중	
7	11	수	백산, 상학, 만덕	만덕중, 덕천중, 덕천여중	
7	12	목	양천, 양덕, 덕양	양덕여중	
7	13	금	덕성, 화정, 명덕, 학사	화명중	
2 학 기					
9	03	월	용수, 명진	용수중, 명진중	
9	04	화	화명, 화잠, 대천리	대천리중	
9	05	수	금명, 신금	금명중, 금곡중	
9	06	목	와석, 덕천, 금창, 금곡	화신중	
9	07	금	구남, 구포	구남중, 구포중	
9	10	월	신천, 포천	가람중	
9	11	화	모동, 모산, 모덕	모동중	
9	12	수	삼덕, 모라, (솔빛학교)	삼락중, 모라중	
9	13	목	덕포, 덕상, 창진	신라중, 덕포여중	
9	14	금	사상, 꾀범, 감전, 서감		
9	17	월	학장, 학진, 구학	학장중, 엄궁중	
9	18	화	엄궁, 동궁		
10	22	월	명지, 오션, 신명	명지중, 경일중	
10	23	화	명호, 남명, (한솔학교)	명호중	
10	24	수	대저, 대사, 녹산, 신호, 송정	지사중, 신호중	
10	25	목	배영, 덕두, 대상, (혜원학교)	대저중, 낙동중	
10	26	금	천가, 녹명	덕문중, 녹산중	
계			65(3) 개교	37 개교	

(특수학교) 임.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동 래 교 육 청)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4	05	목	거제		
4	09	월		거성중	
6	05	화	금사, 서곡	금사중	
6	07	목	서동, 서명	동현중	
6	08	금	명서, 교동	동해중	
6	11	월	명장, 동상, (부산맹학교)	동신중, 학산여중	
6	12	화	명동, 안락, 총렬	총렬중	
6	14	목	안남, 혜화	안락중, 남일중, 혜화여중	
6	15	금	안민, 안진, 토현	토현중	
6	18	월	연일, 연천, 과정, (동암학교)	연천중, 연일중	
6	19	화	연미, 동명, 연산	연제중	
6	20	수	연동, 연제, 연서, 연신	연산중	
6	21	목	거학, 여고, 교대부속	여명중, 이사벨중	
6	22	금	남문, 창신	사직중, 거제여중	
6	25	월	미남, 예원	내성중, 사직여중	
6	26	화	사직, 금강, 달북	온천중	
6	27	수	온천, 내산, 수안	유락여중	
6	28	목	낙민, 명륜, 내성	동래중	
6	29	금	동현, 현곡	부곡중, 부곡여중	
7	02	월	부곡, 금성	금양중, 장전중	
7	03	화	금정, 금빛, 금양, 장전		
7	04	수	구서, 장서, 두실, 금샘	구서여중	
7	05	목	남산, 청룡, 삼육, (은애학교)	남산중, 금정중	
7	06	금	공덕, 동래	동래여중, 부산예술중	
7	09	월		브니엘예술중	
계			60(3) 개교	34 개교	

(특수학교) 임.

2018년 학생소변검사 일정표

(해운대학교)

월	일	요일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4	27	금	광남		
4	30	월	남천, 광안, 호암	수영중, 동아중, 한바다중	
5	01	화	민락, 민안, 수영	망미중, 동수영중	
5	02	수	수미, 배산, (배화학교)	광안중	
5	03	목	망미, 센텀, 강동	센텀중	
5	04	금		해운대중	
5	08	화	해강, 해원	해강중	
5	09	수	해림, 해운대		
5	10	목	해동, 좌동, 송정	해운대여중	
5	11	금	해송, 동백, 신곡	동백중, 신곡중	
5	14	월	신도, 양운	신도중, 양운중	
5	16	수	부흥, 상당	부흥중, 상당중	
5	17	목	좌산, 송수, 신재, 재송	재송여중	
5	18	금	반산, 반여, 위봉	재송중, 반여중	
5	21	월	인지, 무정, 반석	인지중	
5	23	수	장산, 반안, 삼어	장산중, 반안중	
5	24	목	반송, 운송	반송중, 반송여중	
5	25	금	송운, 운봉, 신진, 철마	운송중	
5	28	월	기장, 대청	기장중, 대청중	
5	29	화	일광, 교리, 죽성, 용암, 내리		
5	30	수	월내, 칠암, 좌천, 장안, (성우학교)	장안중	
5	31	목	월평, 모전, 정원, (해마루학교)	모전중	
6	01	금	신정, 가동, 달산	신정중	
6	04	월	정관, 방곡	정관중, 중앙중	
계			64(3) 개교	32 개교	

(특수학교) 임.



학교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대응 요령

◇ 결핵 ◇		◇ 기타 감염병 ◇	
○ 교육지원청 역할(역학조사 시)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교육부) ▶ 교육지원청 결핵관리 담당자는 역학조사 지원 및 대상 학교에 대한 조사 협조 유도 ▶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에 따른 임무 확인(협업 자세 등)		○ 교육지원청 역할 ▶ 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 학교 ·역학조사 시 : “결핵 처리 절차”준용 (노로바이러스 : 2017년 모의훈련 준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조와 관할 보건소의 자문 획득 지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고 접수	⇒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지도 ○ 환자 상태 확인(격리여부 등)	NEIS 확인 (신고 접수)	⇒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사항 확인 ○ 환자 현황 확인
학교 방역 지원	⇒ ○ 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당부 - 현장 지도점검 결과 복명 (기본방향 보고서식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학교 방역 지원	⇒ ○ 확인(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현장 지도점검(보건소 자문) - 결과 복명 (기본방향 보고서식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1차 협의회 참석	⇒ ○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협조 유도) - 현장조사 -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추수 점검	⇒ ○ 환자 증가 유무 확인 - (증가 시) 보건소의 지속적인 자문 획득 지도
보고 사항 제출(최초)	⇒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 교육지원청 지원 및 지도 내용 첨부	감염병 환자 통계 관리	⇒ ○ 연도별 발생 환자 통계 정리
중간 점검	⇒ ○ 엑스선 검사 또는 잠복결핵 검사 날 - 학교 현장 확인 및 지도 - 검사결과 교육지원청에 유선 통보 당부		
보고 사항 제출(최종)	⇒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결핵 환자 통계 관리	⇒ ○ 연도별 결핵 환자 통계 정리		

※ 각급학교 방역물품 확보 권장 기준
 ① 체온계 :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
 ② 의료용 장갑 : 보건실용(학급수 × 5개)
 ③ 일회용 마스크 :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
 ④ 기타(필요 시) :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

 ※ 방역 실시 기준
 ① 법정 기준
 - 4월~9월(1회이상 / 2개월), 10월~3월(1회이상 / 3월)
 ② 권장 기준
 -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1월) 또는 감염병 유행경보, 주의보 등 발령시 추가 실시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2017년 11월 현재)

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22종)	제4군 (20종)	제5군 (6종)	지정감염병 (14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 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 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페스트 황열 뎡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 등)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균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 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 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펠로박 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 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토제네스 감염증, 그람 A형 로타바이러 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 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 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 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 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 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균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폐렴균 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 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산학협력관 5층	051)860-3259
2	(주)그린환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3층	051)936-1024
3	누리생명과학원	경남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055)383-3225
4	(주)동진 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팔용동 39-13)	055)293-5440
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교기업 수질검사센터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055)751-3545
6	(주)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6 (덕곡리 178)	055)744-2550 055)744-2552
7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204호	052)279-3200
8	(주)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정촌산업단지내)	055)754-0648

(2017.12월, 부산·경남 민간업체 기준)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설치일자 (년월일)	설치장소 (관리번호)	필터 교환주기	청소·소독 주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수질검사			
				1/4	2/4	3/4	4/4
위생관리 책임자 성명, 연락처		위탁(용역)업체 담당자		학교(업체계약·관리) 담당자			
		성명					
		연락처					

[illegible]

※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는 정수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2년간 기록유지)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

설치일자 (년월일)	설치장소 (관리번호)	필터 교환주기	청소·소독 주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수질검사			
				1/4	2/4	3/4	4/4
2014.3.10	2층 복도 동편 (2-4)	OO필터: 3개월 OO필터: 6개월 OO필터: 12개월	물탱크 -약품소독 ○개월 정수기 외관 -증기소독 ○개월	2. 10 적 합	5. 10 적 합	8. 10 적 합	11. 10 적 합
위생관리 책임자 성명, 연락처		위탁(용역)업체 담당자		학교(업체계약·관리)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 청소·소독 등 점검 내역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조치사항 포함 기재)	업체 점검자 (성명, 서명)
2014.4.11	○	OO필터 교환, 물탱크 약품소독, 외관 증기소독	
2014.5.10	○	OOOO필터 교환, 외관 증기소독	
2014.5.30	○	꼭지 밸브 교체	
2014.6.15	○	OO필터 교환	
2014.6.30	○	물탱크 약품소독, 외관 약품소독	
2014.7.10	○	수질검사(부적합)	
2014.7.11	○	물탱크 약품소독, 꼭지 등 외관 증기소독	
2014.7.25	○	수질검사 재검사(적합)	
2014.	○	OOOO필터 교환	

※ 「학교정수기 위생관리 실명제 카드」는 정수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2년간 기록유지)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 기준

건축물의 명칭	○○○○학교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학교
위생점검일	

조치사항		점검기준	적부(○,×)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먼지 등의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벽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에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점검결과 조치내용			

※ 법정서식 : 「수도법시행규칙」 별표6의2

질	담당자		
제			

(원)점점결과

항 목			점 검 내 용	()월 점 검 결 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5월	26월	27월	28월	29월	30월	31월	
환기의 적정성	교실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기계환기 장치의 작동 기동 여부	우수																																	
		보통																																	
		미흡																																	
환기의 적정성	조명기구와 적정수 운영 여부,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온습도의 적정성	교실내 냉난방으로 적정 온습도의 유지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소음	교실외 부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존재 여부	우수																																	
		보통																																	
		미흡																																	
근기질의 적정성	교실내 학생들이 호흡기 계통의 통풍, 두름,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음시선 등 청력성	음시선과 구내배선 등이 청력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청소	교실의 청결상태, 식레기름, 청소도구의 관리상태 등	우수																																	
		보통																																	
		미흡																																	
			주 요 조 직 사 항 (월별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 작성요령 : 점검내용별 해당란(우수, 보통, 미흡)에 V 표시함

※ 근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표2】에 의거함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설명자료

연번	점검항목	측정구분	측정 대상시설	비 고
1	조도(인공조명)	기본공통	교실(일반2실, 특별1실)	천판면, 책상면 조도 측정
2	실내온도 및 습도	"	"	수업중인 교실 측정
3	소음	"	"	빈교실(외부 소음 확인)
4	미세먼지(PM10)	"	"	수업중인 교실 측정
5	이산화탄소(CO ₂)	"	"	수업중인 교실 측정
6	폼알데하이드(HCHO)	"	"	현장측정은 수업중인 교실 측정 주시험법은 빈교실 측정
7	총부유세균	"	"	수업중인 교실 측정
8	낙하세균	"	보건실, 식당(해당학교)	학생들이 없는 상태 측정
9	진드기	"	보건실, 기숙사(해당학교)	침구류 측정
10	오존(O ₃)	"	교무실, 행정실	복사기, FAX, 컴퓨터 등 사무 기기가 많은 곳
11	석면	선택	교실(일반2실, 특별1실) • 석면 사용하는 학교 *기존 “석면 단열재”→“석면 건축자재 50㎡이상 또는 분 무재, 내화피복재”사용 시설 로 확대	빈교실 측정(무석면 학교로 확인된 경우 제외)
12	일산화탄소(CO)	선택	도로변(왕복2차선) 인접 학교 교실 측정항목에 추가	수업중인 교실 측정
13	이산화질소(NO ₂)	선택	"	수업중인 교실 측정
14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개별유기화합물(벤젠,톨루엔, 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선택	신축(증·개축)후 3년 이내 교실, 기숙사 신축(증·개축), 리모델링 완료시 기숙사	전체 신축 또는 개축인 경우 3실(일반2실,특별1실), 일부 증축, 리모델링인 경우 10실이상은 3실, 10실 미만은 2실 측정 원칙 - 빈교실 측정 신축(증·개축), 리모델링 완료시 기숙사, 100실 이하 2실, 100실 이상 3실, 이후 100실 초과시 1실 추가 측정
15	라돈(Rn)	선택	1층 이하 교실 *기존 지하교실→1층 이하로 변경	빈교실 측정(1실)

※ 해당실이 1실인 경우 1실 측정, 11번 항목부터 14번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 측정 생략.



공기정화장치 운영 안내서

1.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인 확인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이 필요함.
- 학교보건법 상의 초등학교 교실 공기질은 PM_{10} $100 \mu g/m^3$ 이하, CO_2 1,000 ppm (기계환기시설은 1,500 ppm) 이하로 유지해야함.
- 현재 공기질 취약 우려지역 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범설치된 공기정화장치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동 운영안내서는 관련 전문연구를 거쳐 별도의 운영안내서 제작 전 현재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안내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2. 운영 지침

- 학생 및 교직원의 활동도가 따라 교실 오염도가 높을 때는 교실 안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실 내 공기질 기준을 유지하도록 함.
- 관련 정보자료 및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의 대기의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교실 내로 유입되는 대기의 조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교실로 유입 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함.
 - 참고 사이트 : 대기오염실시간공개 (www.airkorea.or.kr),
환경부(www.me.go.kr), 기상청 (www.kma.go.kr)
 - 공기정화설비 가동조건 : 고농도 예보(당일 농도 ‘나쁨’) 및 예비주의보 발령 시
※ 창문 등을 이용한 환기가 불가한 경우 사용



- 외기 공기가 나쁨 상태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강」 모드로 연속 가동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실내 CO₂ 농도증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창문환기를 실시해야함. 이때, 외기 중 미세먼지의 유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급적 복도를 향한 창문을 활용함.



- 청소 시에는 공기정화장치의 가동을 멈추고, 잠시 창문을 열어둔 채 청소를 실시함. 청소도구는 진공청소기를 활용하여 청소를 하는 것을 권고하며, 진공청소기와 함께 걸레질을 하여 바닥에 축적된 미세먼지를 제거함.



- 학생들의 등교 전과 하교 후, 교실 내를 충분히 환기하여 밤에 누적 및 생활로 인한 누적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하도록 함.

3. 관리 지침(공기청정기 기준)

-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설치 시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 공기청정기가 넘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안전바나 벽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벽에 고정시켜야 함.
- 청소 시 공기청정기를 꺼야함. 공기청정기 필터에 과다한 이물질 흡입 및 오염을 시켜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함.
-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내부 청소는 반드시 병행해야 함.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필터인 만큼 필터 교체와 청소를 게을리 하면 공기청정기능이 떨어지므로 꾸준한 청소와 관리가 필수임.
-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일반적으로 프리필터, 향균/탈취필터, 헤파필터 등으로 구성됨
 - 프리필터 :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의 털 등 큰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 2개월에 1번씩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심하게 더러워진 경우 중성세제를 사용해 세척 후 그늘에서 건조
 - 향균/탈취필터 : 실내의 냄새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 향균/탈취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주기에 따라(6개월에 1번) 필터를 교체하여야 함.
 - 헤파필터 :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 헤파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교체하는 것을 권장함.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상황 자체점검표

☐ 학교명 :

☐ 분야별 확인결과

분 야	확인사항	배점(기준)	확인결과 (점수)
계	-	100	
사전준비 상황	소계	60	
	① 대응매뉴얼 비치 여부	30 ▪ 비치 30 ▪ 미비치 0	
	② 교직원 및 학생 대상 교육 여부	15 ▪ 교육실시 15 ▪ 교육계획수립 10 ▪ 계획없음 0	
	③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10 ▪ 구축 10 ▪ 미구축 0	
	④ 민감군 및 고위험군 대상자 파악	5 ▪ 파악 5 ▪ 미파악 0	
매뉴얼 숙지	소계	30	
	⑤ 예·경보 알림문자 신청	10 ▪ 신청 10 ▪ 알고는 있으나 미신청 5 ▪ 모름 0	
	⑥ ‘우리동네 대기질’ 앱 설치	10 ▪ 설치 10 ▪ 알고는 있으나 미설치 5 ▪ 모름 0	
	⑦ 전파·결과보고 체계 숙지 * 예경보 단계, 수준, 대응·조치 방안 등 인지도 포함	10 숙지수준 ▪ 상 10 ▪ 중 5 ▪ 하 0	
비품구비	소계	10	
	⑧ 황사마스크, 상비약 등 구비 * 점안제, 소독제 등	10 ▪ 구비 10 ▪ 구비예정 5 ▪ 구비계획 없음 0	
기타 사항 (확인, 지원, 건의사항 등)			

위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음.

2018년 월 일

작 성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직 급 (교장 또는 교감) 성 명 (인)



교사내 소음피해 현장확인 조사표

1. 학교 현황

학교명	보통실수	특별실수	학생수	교직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2. 조사일시 및 날씨 : 2011년 월 일 시 분 / 날씨 :

3. 피해실태 및 주변 현황

피해 종류	소음원의 종류(해당란 ■표)	☐ 도로 ☐ 철도 ☐ 공장 ☐ 건설 ☐ 기타
소음	피해 교실수(보통실+특별실)	<u>보통실 : 실,</u> <u>특별실 : 실</u>
	방음벽 설치 현황	☐ 설치 ☐ 미설치
	이중창 설치 교실수	<u>보통실 : 실,</u> <u>특별실 : 실</u>
	냉·난방시설 설치년도(계획포함)	
	학교 담장의 시설 형태	☐ 블록담장 ☐ 웬스형 ☐ 철망 ☐ 개방형
	방음벽 설치시 규모(m)	○ 길이 : m ○ 높이 : m
	주변 환경 실태 (소음원의 위치, 지역여건, 피해사유 등)	

소음 측정	☐ 소음도 측정 결과 (측정지점 : 층층 층 학년 반)
	▶ 창문 개방시 : dB/A(등가소음도)
	▶ 창문 밀폐시 : dB/A(등가소음도)
	☞ 측정장소는 당해 학교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을 선정하여 측정하되, 필요시에는 2곳 이상 측정

※ 학교 배치도, 부근지번도, 현장사진 활용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일일 위생 점검표

결 재	담당자		

□ 점검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점검 항목														
매점	매점 주변 청결관리 상태(분리수거 등)													
	식품, 문구류 구분진열 등 정리정돈 상태													
	휴게실 등 내부 청결 관리상태													
	휴게실의 전자레인지, 냉장고 위생관리 상태													
매점, 식품자동판매기 (공통사항)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탄산음료, 즉석식품(면류, 햄버거, 김밥류 등), 패스트푸드 등 판매여부													
	직접조리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냉장보관 준수여부													
부적합 내용 또는 시정·조치사항														

※ 작성요령

- ① 이 서식은 A4형 서식으로 변경하여 1개월 또는 주간 단위로 사용 가능
- ② 이 서식은 2014년도 변경된 서식으로 각급학교에서는 2014. 3월부터 적용
- ③ 날짜별 적·부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는 '○(적합)', '×(부적합)'로 기재
- ④ 점검결과 부적합 내용과 조치사항, 교육청·구청 점검사항은 하단에 기재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점검표

결 재			

점검 항목		점검결과(해당사항 ○표)
매점	매점 주변 청결관리 상태(분리수거 등)	양호, 보통, 불량
	식품, 문구류 구분 진열 등 정리정돈 상태	양호, 보통, 불량
	휴게실 등 내부 청결 관리상태	양호, 보통, 불량
	휴게실의 전자레인지, 냉장고 위생관리 상태	양호, 보통, 불량
매점, 식품자동판매기 (공통사항)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적합, 부적합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적합, 부적합
	탄산음료, 즉석식품(면류, 햄버거, 김밥류 등), 패스트푸드 등 판매여부	적합, 부적합
	직접조리 식품 판매 여부	적합, 부적합
	유통기한, 냉장보관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내용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참석자(점검자) 확인서명

학교 담당자 : 소속)

성명)

(서명)

학생대표 :

성명)

(서명)

학부모대표 :

성명)

(서명)



부산관내 보건소의 2018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1. 사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흡연음주 예방교육 “담배말고 꿈을피자!”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교직원 - 내용 : 흡연·음주 예방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 돌봄 놀이터	초등학교 2개소	- 기간 : 4월~7월 - 장소 : 초등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학생 40명(1개소 20명) - 내용 : 건강식생활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놀이 실습	미정 (시 전체 사업임)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치아 만들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관내 치과의원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700명 -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치료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2. 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흡연음주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또는 방송 교육 - 대상 : 대상 학교 학생 및 선생님 - 내용 : 흡연·음주가 몸에 미치는 영향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음주예방 학습체험관	초등 3개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 대상 : 해당 학교 학생 100여명 내 - 내용 : 체조, 가상음주체험, 정상폐와 흡연폐 비교 등 교육물 활용 체험 학습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흡연음주예방 교육극	초등 2개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 대상 : 해당학교 학생 및 선생님 - 내용 : 금연노래, 율동을 가미한 뮤지컬 형식 흡연·음주 예방 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금연교실	중·고 2개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흡연학생 10~15명 - 내용 : 강의, 분임토의, 역할극, 미술치료 등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이동식 금연클리닉	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흡연학생 및 선생님 - 내용 :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관학 연계 금연캠페인	중·고 (관내)	- 기간 : 미정(5~6월 세계금연의 날 부근) - 장소 : 미정 - 대상 : 관내 구민 대상 - 내용 : 금연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가두 캠페인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관내)	- 기간 : 미정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등돌봄교실 아동 1~2학년 - 내용 : 건강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과일간식 제공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관내 초,중학교 (관내)	- 기간 : 1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1학년 - 내용 :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중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초 4 (관내)	- 기간 : 3~12월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내용 : 구강검진 및 개별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제공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불소도포사업	초등학생 (관내)	- 기간 : 5~8월 -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3. 영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장애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6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5학년(예정) - 내용 : 휠체어 장애인 직접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교실	초·중·고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해당학교 학생(희망자) 00명 - 내용 : 강당수업 및 방송수업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 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5월~7월 - 장소 : 희망 초등 돌봄교실 등(방문교육) - 대상 :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희망자) - 내용 : 신체활동 놀이, 식생활 체험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초·중·고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 ~ 11월 - 장소 : 안심기관 지정장소 - 대상 : 해당 안심기관 학생 - 내용 : 알레르기 질환자 유병조사, 알레르기 검사 지원, 보건실 천식 응급키트 및 보습제 비치, 아토피피부염 환자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자료 제작 및 비치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초등 흡연예방교실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재학생 - 내용 :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중·고등학교 (관내)	- 기간 : 연중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상담) - 대상 : 학교당 흡연학생 10명이상 - 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등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교육(흡연자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전화 신청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6월~12월 - 장소 : 협력 치과에 대상자가 방문 - 대상 : 학년 미정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치과 기본 진료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절주	초·중·고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선정 학교에 전문 강사가 방문, 교육 - 대상 : 전 학년 - 내용 : 음주예방교육, 과음의 신체적·정신적 폐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TD, Tdap 및 일본뇌염(사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초6~중1 (부산시 전역)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및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 대상 : 2005, 2006년생(단,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여아만 지원가능)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보호자동반)

4. 중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 놀이터	초등 (관내)	- 기간 : 2월~9월 - 대상 : 3개교(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 - 운영 : 초등학교, 대학, 농림부 연계체제 구축 - 방법 • 운동: 대학교에서 운동관련 학과 학생 지원 • 영양·구강 : 저학년 대상 식생활 및 구강 관리 교육 • 농림부 : 초등학생 대상 간식(과일) 지원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어린이쑥쑥 건강배양	초등 (관내)	- 기간 : 3월~10월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 운영 : 학교방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내용 • 구강건강 : 칫솔질 교육 등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바니쉬 도포 • 운동 : 성장기 운동의 중요성 및 키크기 체조 실습 • 금연·절주 : 흡연·음주의 유해성 및 간접 흡연예방교육 공연 실시 • 혈압·혈당 : 나의 가족 혈압·혈당 알기 교육 진행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청소년미래 건강배양	중·고 (관내)	- 기간 : 3월~10월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내용 • 청소년 흡연예방극 공연 운영 • 금연 및 절주 교육 • 성교육 프로그램(나의 소중한 성장이야기 교실) • 비만 프로그램 • 구강관리(올바른 잇솔질, 불소겔 도포) • 미리미리 심혈관 관리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초등 (관내)	- 기간 : 2월~12월 - 대상 : 초등학교 - 방법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강사초빙 및 교육자료 활용 - 내용 •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조사 •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물 배부 • 고위험군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 교육정보센터 연계(강사 지원, 아토피·천식 상담 등)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 (2월~3월 중 5개학교 모집)

5. 남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금연교실	중·고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흡연학생(희망자) 10명~15명 - 내용 :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END 활용 (주1회 총4회 운영)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캠페인	초,중,고 (관내)	- 기간 : 9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 전교생 - 내용 : 금연·금주 서약서 작성 패널·모형 전시 교내캠페인 연계 운영(물품지원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교실	유치원 원아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유치원 지정장소(방문운영) - 대상 : 만4·5세 원아 - 내용 : 체험형 흡연 예방 교육 (주1회 총3회 운영)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초등학생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관내 협력치과 - 대상 : 지역아동센터이용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4학년 - 내용 : 보건소 1차 구강상담 후 협력치과를 이용하여 구강검진 후 구강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예방 검진 포함) 및 치료비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6. 동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금연교실	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신청 중·고 학생 - 내용 :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등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건강증진교실 (운동, 영양, 구강)	초·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신청 초·중·고 학생 - 내용 :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7. 부산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부산진구 관내 10개 초등학교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희망자 30명 - 내용 : 뮤직복싱교육 30회, 영양교육 등	공문 발송 후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고등학교 탄력라인교실	부산진구 관내 특성화 초등학교	- 기간 : 3월~11월(선택가능)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0명 - 내용 : 주1회 운동교육 및 영양교육 등	관내 특성화 고교대상 공문 발송 후 희망신청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놀이터(가제)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아동	- 기간 : 미정 - 장소 : 학교 희망장소 -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 내용 : 신체활동놀이 프로그램,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부산시에서 일괄 신청 받아 각 구로 배당할 계획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부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 내 구강보건실 - 대상 : 1~4학년 - 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카메라촬영, 구강검진,우식활성도검사,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	공문 발송 후 동의서 신청 접수 예정
학교양치교실운영	부산진구 양치교실 설치학교 (11개교) 당감,연학,개화 개금,선암,동양 성서,성진,동원, 개림,가평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해당학교방문교육) - 대상 : 1~6학년 전교생대상 - 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우식활성 도검사,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공문 발송 후 동의서 신청 접수 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부산진구관내 초등학교4학년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방문) - 대상 : 관내초등학교 4학년 아동 650명 - 내용 :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처치	관내 초등학교 공문발송 후 대상자 접수예정
학생장애 예방교실	관내 초등학교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등학생 - 내용 : 장애인강사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전화신청 접수)
국가예방접종 사업	만12세 이하 아동 (2005.12.31. 이전 출생자)	- 기간 : 연중 - 장소 : 지정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대상 : 2005.12.31.이전 출생아동 누구나 - 내용 : 국가예방접종 Td 등 17종 무료 접종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에서 지정위탁기관 검색 후 해당기관 방문 후 이용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 - 대상 : 전교생 - 내용 : 손씻기 세정 도구 체험 및 올바른 손씻기 교육(손씻기 장비 대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부산진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교육청 초등학교 프로그램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1개교	- 기간 : 9월~10월 - 장소 : 해당 초등학교 - 대상 : 주의력 및 행동 상에 문제가 있는 초등학교 0명 ※ 관심군 및 일반 학생도 가능 - 내용 : 문제해결기술, 상황 파악 기술, 규칙 지시 따르기 기술, 좋은 친구 되기 기술 등	신청 후 기관 선정 (담당자와 일정 조율)
부산진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교육청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부산진구 내 중고등학교 1개교	- 기간 : 9월~10월 - 장소 : 해당 중·고등학교 - 대상 : 학생정서행동 0명 ※ 관심군 및 일반 학생도 가능 - 내용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신청 후 기관 선정 (담당자와 일정 조율)
생명지킴이 교육	부산진구 내 중고등학교 3개교	- 기간 : 7월 - 11월 - 장소 : 중·고등학교 신청학급 내 - 대상 : 신청 중·고등학교 내 학생 - 내용 : 청소년기 자살현황,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생명사랑을 위한 방법, 만족도 평가 실시 ※ 강사 수에 맞춰 진행하게 되어 일부 받은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교육할 가능성 있음 (ex, 5반의 경우 1반,2반,3반-1교시, 4반, 5반-2교시).	신청 후 기관 선정 (담당자와 일정 조율)
게이트키퍼 교육	부산진구 내 중고등학교 3개교	- 기간 : 7월~11월 - 장소 : 중·고등학교 신청학급 내 - 대상 : 신청 중·고등학교 내 학생 - 내용 : 보기(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본다), 듣기(실제 자살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말하기(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한다) ※ 강사 수에 맞춰 진행하게 되어 일부 받은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교육할 가능성 있음 (ex, 5반의 경우 1반,2반,3반-1교시, 4반, 5반-2교시).	신청 후 기관 선정 (담당자와 일정 조율)

⑧ 강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비만탈출교실	중학교 (관내)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미정) - 대상 : 참여 신청 학생 40여 명 - 내용 : 운동 교실 운영	강서구생활체육회 선정 학교
사랑해! 청소년 금연교실	청소년 수강명령 대상자 및 흡연 경험 학생 (관내)	- 기간 : 1월~12월 - 장소 : 부산보호관찰소, 보건소 - 대상 : 청소년 수강명령 대상자 및 흡연 경험 학생 - 내용 : 재흡연 예방 교육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학교 점심시간 차량 “작은 보건소” 운영	초, 중, 고 (특수학교 2개교 포함)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 운동장 - 대상 : 전교생 - 내용 : 건강체험터 운영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방문교육) - 대상 : 교육 신청 학교 - 내용 : 학교 환경 관리,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 보습제 지원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어린이·청소년 충치예방교실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학교(방문교육) - 대상 : 교육 신청 학교 - 내용 :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교습, 구강 위생용품 배부, 불소 도포 등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9. 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실	북구 관내 초·중·고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해당학교로 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또는 신청 학년 학생 - 내용 : 흡연·음주의 폐해와 예방 등 강의	관내 학교 대상 세부 수요조사 시 사업별 신청 접수 ※수요조사 일정 미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북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협력 치과의원 - 대상 : 4학년 학생 - 내용 : 치과의원 방문 구강검진, PHP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 - 비용 : 무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장애발생 예방교육	북구 관내 초·중·고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신청학급 학생 - 내용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발생 예방 교육을 통한 잠재적·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손씻기 기구 대여	북구 관내 초등학교	- 기간 : 4월~10월 - 방법 : 기구 대여후 학교 자체 교육실시 - 내용 : 손을 씻기 전후 비교를 통한 정확한 손씻기 방법 습득	

10. 사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1회성 운동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 강의 및 실습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1회성 영양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 강의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비만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20명 이상 - 내용 : 강의 및 실습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1회성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반별수업 우선, 어려울 경우 학년별/전교생 - 내용 : 강의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7월, 9월~12월(주1회) - 장소 : 다누림센터 내 건강증진센터 - 시간 : 방과후(4:30~5:30) - 대상 : 흡연청소년 - 내용 : 청소년 금연상담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1회성 음주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 강의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응급처치교육	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교육신청학교(방문교육) - 대상 : 100명 내외 - 내용 : 강의 및 실습(심폐소생술)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1회성 ‘올바른 손씻기’ 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장 - 대상 : 교육신청학급 - 내용 : 강의, 분임토의, 역할극, 동영상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예방교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관내 안심기관)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또는 학년별 - 내용 : 인형극, 동화구연, 체험, 동영상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11. 금정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치원, 초, 중, 고 (관내)	- 기간 : 연중 - 장소 : 학교(유치원) 등 - 대상 : 학생, 교사, 부모 등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유병 설문조사 학생·교사·부모교육지원 교육자료, 홍보물 등 제공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천식응급키트, 알레르기검사 등 지원	희망학교 신청접수 후 보건소에서 선정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흡연예방교육	초중고(관내)	- 기간 : 3월~12월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장소 : 대강당 집합 또는 방송교육 - 내용 : 담배의 해로운 성분,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금연 상담	관내 초·중· 고등학교에서 위탁한 청소년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장소 : 금정구 보건소 - 내용 : 청소년 전문 금연상담사 상담, 청소년 금연상담실 운영, 행동수정을 통한 금연방법 소개, 금단증상 극복법 등	전화 예약 접수 (519-5097~8, 5042)
불소용액양치사업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각 학교 지정장소 - 대상 : 전교생 - 내용 : 불소용액양치	관내초등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서동, 장전 초등학교	- 기간 : 4월~12월 - 장소 : 각 학교 구강보건실 - 대상 : 전교생 -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학교
초등돌봄 비만예방교실	초등학교 2개교 (관내)	- 기간 : 5월~6월 또는 9월~10월(8주간) - 장소 : 2개교 돌봄교실 및 체육실 - 대상 : 돌봄교실 아동 각 30명 - 내용 : 식생활교육(주1회)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주2회)	관내초등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장애발생 예방교육	관내 초등학교 학생	- 기간 : 3월 ~ 11월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 장소 : 학교 - 내용 : 교육을 통한 장애발생예방 실천 의지 함양 및 장애인 인식 개선 효과	교육 신청 접수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519-5066

12. 동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금연절주 예방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희망학교 전부 - 내용 : 강의, 동영상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기간 : 4월~12월 ※ 안심기관 선정 후 교육 일정 조율 - 장소 : 안심기관 방문 교육 - 대상 : 안심기관 학생 및 아동 - 내용 : 집합교육, 방송교육, 동화구연, 인형극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불소양치 등 구강보건사업	초·중학생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 - 대상 : 전교생(희망학교) 13,000여명 - 내용 : 불소 용액 양치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초등학생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치과주치의 치과기관 - 대상 : 초등22개 초등4학년 등 1,400여명 - 내용 : 기본진료(검진,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 (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부산맹학교, 내성초등학생	-기간 : 3월~ 12월 - 장소 : 학교 구강보건실(방문) - 대상 : 전교생 400여명 - 내용 : 구강검진, 예방치치 등 지속 구강 건강관리	일정 등 해당학교와 협의 후 상시운영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장애발생 예방교실	관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3월~12월(교육희망일자 학교 지정)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중·고등학생(1~3학년 합반가능) - 내용 : 장애의 이해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 및 습관 교육 등 - 강사 :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사 - 교육비 : 무료(1회 100천원 보건소 지원)	동래구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 놀이터	초등학교 1~2학년	- 기간 : 5월~7월말(세부사항 미정) - 장소 : 학교 지정장소 - 대상 : 선정학교 초등돌봄교실 1~2학년 - 내용 : 신체활동 놀이 및 식생활 체험	부산시 내 지역 및 학교 신청 접수 후 선정 예정

13. 연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음주 교육	초·중·고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내용 : 청소년 흡연 및 음주의 위험 및 악영향 교육, 가상 음주 체험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2~3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 청소년 맞춤형 금연클리닉	초·중·고	- 기간 : 연중 - 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 대상 : 학교에서 보건소로 연계한 흡연 청소년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활용 금연 방법 상담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 (연중 공문 접수)
청소년 '건강짱' 교실	중·고	- 기간 : 4월~10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비만 및 운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 - 내용 :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등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비만교실	초·중·고	- 기간 : 3월~10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비만 및 운동, 영양에 관심 있는 학교 - 내용 : 1회성 교육으로 비만예방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교육 등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장애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애예방교실’	초·중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중학생 -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고 예방·장애 발생예방 교육	관내 초·중학교 희망신청 (2~3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초등4학년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지정된 치과에 연계 - 대상 : 초등4학년아동 500여명 - 내용 :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초등아동 구강건강관리	초등1학년	- 기간 : 3월~9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초등1학년아동 00명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어린이 one-stop 통합건강증진교실	유치원	- 기간 : 4월~11월 - 장소 : 유치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 - 내용 : 1차시(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2차시(영양교육 및 키크기 체조) 3차시(흡연·음주 예방 및 손씻기 교육)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3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트니트니 튼튼이! 쭈기쭈기 쑥쑥이! 균형잡기 운동교실	유치원	- 기간 : 반기(상반기, 하반기) - 대상 : 관내 유치원(6개소) - 장소 : 유치원 지정장소 - 내용 : 폐달로 운동장비를 이용한 신체활동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3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어린이 인형극 ‘어빠! 힘내세요’	유치원	- 기간 : 6월경 - 대상 : 관내 유치원 - 장소 : 연제구청 구민홀 - 내용 : 흡연 및 음주 예방, 성장기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5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실	유치원 초등학교	- 기간 : 3월~11월 - 대상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장소 : 안심기관 지정장소 - 내용 :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인형극, 천연비누 만들기 등)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희망신청 (3월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14. 수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정서행동 특성검사	초·중·고 (관내)	- 기간 : 5월~12월 - 장소 : 수영구청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 혹은 주의군 - 내용 : 학생들의 정신과적 문제를 파악하 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를 목적으로 함	희망대상자 신청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초·중·고등학교 - 대상 : 전교생 - 내용 : 자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삶의 가치 인식하고자 함	희망 초·중·고등학교 신청(공문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사회적응강화 프로그램	중학교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수영구청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 중학생 - 내용 : 학교생활 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제작 하는 프로그램임	중학교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자해 프로그램	중학교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미정 - 대상 : 중학생 - 내용 : 참여기관 내 대상자 선별 후 자해 행동의 중단 및 변화를 위한 효과 적인 동기 유발(자발적인 활동과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중학교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5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 내용 : 영양교육, 운동처방 등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유치원, 초·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 장소 - 대상 : 학생 및 교사 - 내용 : 안심기관 선정 후 학교 및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및 환아관리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튼튼!쑥쑥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치원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유치원 지정 장소 - 대상 : 유치원 원아 - 내용 : 원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구강· 금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희망 유치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하얀치아! 밝은미소! 치아사랑교실	초등학생 (관내)	- 기간 : 4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생 - 내용 : 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구강보건 교육, 개별 불소도포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	유치원,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유치원·학교 지정장소 및 내소 - 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초등학생 - 내용 : 0.2% 불화나트륨(NaF)용액 주1회 양치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생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사업 참여 치과의원 -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4학년 - 내용 : 치과의원(주치의)을 선정 후 단순 일차 진료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 검진·상담 및 예방교육 등 실시	희망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청소년 금연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보건소 및 학교 지정 장소 - 대상 : 흡연청소년 - 내용 : 금연 상담 및 금연교육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 음주 예방교실	유치원,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유치원, 학교 지정 장소 - 대상 : 미취학아동, 아동, 청소년 - 내용 : 흡연, 음주 폐해를 알리고 예방 교육 실시	희망 유치원,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15. 해운대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건강증진 통합교육	초·중 (관내)	- 기간 : 3월~ 11월 - 장소 : 협의 후 선정(방문교육) - 대상 : 전교생 - 내용 : 영양, 운동, 흡연·음주·우울증·감염병 예방, 구강관리, 심폐소생술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 척추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초·중 (관내)	- 기간 : 총 10이내 - 장소 : 협의 후 선정(방문교육) - 대상 : 희망자 20명 - 내용 : 척추건강 기초교육 및 체조 배우기를 통한 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동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함께하는 Sunny Funny 척추체조교실	초·중 (관내)	- 기간 : 3월~11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 (학교자체 또는 방문교육) - 대상 : 신청학교 전교생 - 내용 :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Sunny Funny 척추체조 실시(학교 자체시간 배정 ■ 점심시간, 쉬는 시간, 체육시간 등)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취약지역 아동 건강교실	아동복지시설 (관내)	- 기간 : 3월~ 11월 - 장소 : 시설 내(방문교육) - 대상 : 시설아동 30명 - 내용 : 영양·운동·흡연예방·금주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이동 건강체험터	초·중 (관내)	- 기간 : 연1회 - 장소 : 협의 후 선정(방문) - 대상 : 전교생 - 내용 : 체성분 측정 및 운동상담, 저 나트륨 음식 시식 및 레시피 제공, 가상 음주체험 등 체험활동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이동금연교실	초·중·고 (관내)	- 기간 : 2월~ 11월 - 장소 : 협의 후 선정(방문교육) - 대상 : 흡연학생 10명 이상 희망 학교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행동요법제(가글, 사탕 등) 제공, 금연 성공시 기념품 제공	관내 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16. 기장군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예방교육)	관내 초·중학교 학생	- 기간 : 3월~6월 / 9~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 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점자체험, 보치아게임, 흰지팡이체험 등)	관내 초·중학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페달로 재활운동교실	관내 발달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 포함)	- 기간 : 상반기(미정) / 하반기(미정) - 장소 :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교육장 - 대상 : 관내 발달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 내용 : 페달로 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신체 활동 및 복합놀이, 스트레칭 (그룹재활운동 및 균형증진운동)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연계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청소년 금연교육	중·고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 및 내소교육) - 대상 : 신청학교학생 50여명 - 내용 : 청소년 금연프로그램(END)에 의한 교육(1인당 6회 실시)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초등학교 (관내)	- 기간 : 4월~12월 - 장소 : 학교 구강보건실 - 대상 : 교리,기장,대청,정관초등학교 전교생 - 내용 :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잇솔질교습, 전문가 불소(겔·바니쉬)도포	- 각 초등학교로 사업안내 공문발송 - 학부모 사전동의 여부 확인후 실시
통합 비타민교실 신체활동사업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 대상 : 희망학년별, 반별 - 내용 : 절주,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신체활동사업	지역아동센터	- 기간 : 3월~12월 - 장소 : 보건교육장(보건소, 정관지소) - 대상 : 희망 지역아동센터 - 내용 : 청소년을 위한 거북목증후군 예방 교실	관내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신체활동사업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운동장 또는 강당 - 대상 : 희망학교 - 내용 : 바르게 걷는 방법	관내 초·중·고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4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보건소, 치과의원 지정장소(교육 및 치과진료)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방사선촬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치료 등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집중관리	기장군 거주 아동청소년	- 기간 : 1월~12월 - 장소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 대상 : 정신건강 고위험군 - 내용 : 사례관리 서비스 (전화, 방문, 내소 상담)	- 전화신청 - 내소신청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심층평가	초·중·고등학교 (관내)	- 기간 : 6월~11월 - 장소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 대상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학생 - 내용 : 학교의뢰 → 심층평가 실시 → 추후계획 수립	관내 학교 심층평가 의뢰서 공문 접수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기간, 내용, 장소 등)	참여방법
학교기반 정신건강프로그램	초·중학교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학교 (미정) - 대상 : 신청한 초·중학교 - 내용 : 마음두드림 프로그램, 중학교 정신 건강교육, 집단프로그램	관내 초·중학교 희망신청(공문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예방 안심기관 운영	안심기관 초·중·고 (관내)	- 기간 : 3월~12월 - 장소 : 해당 안심기관 학교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 • 알레르기질환 유병율 조7사 및 환류 • 저소득층 질환아동 검사 및 보습제 등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자료 지원 등	2~3월중 안심기관 신청 안내 공문 발송 및 접수



학교보건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 삭제 <2016.2.3.>

제6조 삭제 <2016.2.3.>

제6조의2 삭제 <2016.2.3.>

제6조의3 삭제 <2016.2.3.>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게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

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6.3.2.>

[전문개정 2007.12.14.]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8.5.29.] 제14조의2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2.1.26.]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 2018.5.29.] 제15조의2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②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0조 삭제 <1998.12.31.>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2.4.][대통령령 제27831호, 201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제2장 삭제 <2017.2.3.>

제3조 삭제 <2017.2.3.>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삭제 <2017.2.3.>

제7조의2 삭제 <2017.2.3.>

제7조의3 삭제 <2017.2.3.>

제7조의4 삭제 <2017.2.3.>

제8조 삭제 <2017.2.3.>

제3장 삭제 <2017.2.3.>

제9조 삭제 <2017.2.3.>

제10조 삭제 <2017.2.3.>

제11조 삭제 <2017.2.3.>

제12조 삭제 <2017.2.3.>

제4장 삭제 <2017.2.3.>

제13조 삭제 <2017.2.3.>

제14조 삭제 <2017.2.3.>

제15조 삭제 <2017.2.3.>

제16조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17.2.3.>

제18조 삭제 <2017.2.3.>

제19조 삭제 <2017.2.3.>

제5장 삭제 <2017.2.3.>

제20조 삭제 <2017.2.3.>

제21조 삭제 <2017.2.3.>

제6장 학교의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명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6.8.29.]

제22조의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29.]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2.3.>

[제목개정 2012.8.13.]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2.3.]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3.]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2.3.>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2.3.>

④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2.3.]

부칙 <제27831호, 2017.2.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교육부령 제107호, 2016.9.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⑤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제7조 삭제 <2017.2.3.>

제8조 삭제 <2017.2.3.>

제8조의2 삭제 <2017.2.3.>

제9조 삭제 <2017.2.3.>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제10조의2(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11조 삭제 <2017.2.17.>

부칙 <제121호, 2017.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구분	기준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4.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농반·가제통·소독접시·드레싱카,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틀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검사용 기구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5.11.14>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별표 3] <개정 2005.11.14>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별표 4] <개정 2005.11.1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별표 4의2] <개정 2016. 9. 1.>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mu\text{g}/\text{m}^3$)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mu\text{g}/\text{m}^3$)	100		
총부유세균(CFU/ 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Bq/ m^3)	148	1층 이하 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mu\text{g}/\text{m}^3$)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m^2)	100	보건실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책상·의자·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책상·의자·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석면을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5] <개정 2014.7.7>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 라.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무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6. 9. 1.>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제3항관련)

점검종류	점 검 시 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1층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6. 9.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업무 분장 관계 관련 법령

발 취

□ 초·중등교육법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